

우대플러스저축보험

98.1

교 보 생 명 보 험 주식 회사

변경확인서

동 보험을 변경함에 있어서 사업방법서 약관,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의 내용이 적합하고 보험료의 계산이 정확함을 확인합니다.

1997. 12. .

교보생명보험주식회사

대표계약인 김재우인

사 업 방 법 서

사업방법서

1. 보험종목의 명칭

우대플러스저축보험

2. 보험기간 및 가입연령 등

구 분	보험기간	가입연령	보험료 납입기간	보험료 납입방법
적립형	7년만기	남자 15세~53세 여자 15세~63세	3년납, 5년납 7년납, 전기납	월 납
	10년만기	남자 15세~50세 여자 15세~60세		
거치형	7년만기	남자 15세~61세 여자 15세~63세	일시납	일시납
	10년만기	남자 15세~58세 여자 15세~60세		

3. 배당에 관한사항

가 회사는 계약자에게 배당하기 위하여 계약자배당준비금을 적립하여야 하며, 계약자배당준비금은 매 사업년도말에 재정경제원강관의 승인을 얻은 금액으로 한다.

나 가항에 의하여 적립된 계약자배당준비금은 “계약자배당준비금적립 및 배당에 관한 지침”에 따라 계약자에게 배당한다.

4. 부가하는 특약

정기특약, 암관련특약, 수술특약, 성인병관련특약, 유족연금특약, 제해관련특약, 입원관련특약, 단체취급특약, 특별조건부특약, 생활보감관련특약, 휴일기해보장특약, 제해장해연금특약, 종합건강보장특약, 3대암보장특약

5. 기타

가 보험료 납입액의 한도

적립형 건당 월보험료 5단위이상 100단위까지 정액
거치형 일시납보험료 50만원 이상

나. 연체이자율

연체보험료에 대한 연체이자율은 연체기간의 「 이 보험의 약관대출이율 - 15% 」

다. 선납보험료

선납보험료는 당월분을 포함하여 12개월분이하의 보험료를 선납할 때에 한하며,
선납보험료는 월납보험료의 배수로 납입하여야 한다

라. 동보험의 자산은 일반보험의 자산과는 별도로 구분계산하여 운용한다.

마. 지급여력 적용에 관한 사항

동 상품은 생명보험회사의 지급능력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경영 510-3601('96.3.2)」 제5조(연동형보험료감소액) 제3항에서 정한 금리연동형 상품으로 간주한다.

우대플러스저축보험 약관
(적립형)

우대플러스저축보험 약관(적립형)

제1조 【보험계약의 성립】

- (1) 보험계약은 보험계약자의 청약(請約)과 보험회사의 승낙(承諾)으로 이루어집니다 (이하 보험계약은 “계약”, 보험계약자는 “계약자”, 보험회사는 “회사”라 합니다)
- (2) 회사는 피보험자가 계약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승낙을 거절할 수 있으며, 계약자는 청약을 한 날 또는 제1회보험료를 납입한 날로부터 15일이내에 그 청약을 철회(撤回)할 수 있습니다
- (3) 회사는 계약의 청약을 받고, 제1회보험료를 받은 경우에 진단을 받지 아니하는 계약 (이하 “무진단계약”이라 합니다)은 청약일, 건강진단을 받는 계약 (이하 “진단계약”이라 합니다)은 진단일로부터 30일이내에 승낙 또는 거절하여야 하며, 승낙한 때에는 보험증권을 교부합니다 그러나 30일이내에 승낙 또는 거절의 통지가 없으면 승낙된 것으로 봅니다.

제2조 【계약의 체결 및 보험료】

- (1) 계약자는 다음에 정하는 보장계약과 적립계약을 동시에 체결하여야 합니다.

(이하 “보장계약”과 “적립계약”을 합하여 “계약”이라 합니다)

1 보장계약

보험기간중 피보험자가 사망 또는 별표3에서 정하는 “장해등급분류표” (이하 “장해분류표”라 합니다)중 제1급의 장해 (이하 “제1급의 장해”라 합니다) 또는 별표2(재해분류표)에서 정하는 재해(이하 “재해”라 합니다)로 인한 제2급 내지 제6급의 장해 또는 별표4(교통재해분류표)에서 정하는 교통재해(이하 “교통재해”라 합니다)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4일이상 계속하여 입원하였을 때 보험금을 지급받기 위한 계약

2 적립계약

보험기간이 끝날 때까지 매년 보험계약해당일에 피보험자가 살아있을

경우 생활여유자금 및 만기보험금을 지급받기 위한 계약
(2)계약자는 제1항에서 정하는 보장계약보험료와 적립계약보험료를 합하여 납입하여야 합니다. (이하 “보장계약보험료” 와 “적립계약보험료” 를 합하여 “보험료” 라 합니다)

제3조 【계약의 효력】

(1)회사는 계약의 청약을 승낙하고 제1회보험료를 받은 때로부터 이 약관이 정한 바에 따라 책임을 집니다. 그러나 회사가 청약시에 제1회보험료를 받고 청약을 승낙한 경우에는 제1회보험료를 받은 때로부터 이 약관이 정한 바에 따라 책임을 집니다. (이하 제 1회 보험료를 받은 날을 “책임개시일” 이라 하며 책임개시일을 “보험계약일”로 봅니다)
(2)회사가 청약시에 제1회보험료를 받고 청약을 승낙하기 전에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도 책임개시일로부터 이 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책임을 집니다.
(3)회사는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중 한가지의 경우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1.제12조 (가입자의 고지의무)의 규정을 준용하여 회사가 책임을 지지 아니할 수 있는 경우
2.제12조 (가입자의 고지의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회사에 알린 내용 또는 건강진단 내용이 보험금 지급사유의 발생에 영향을 미쳤음을 회사가 증명하는 경우
(1)계약청약서에 피보험자의 직업 또는 직종별로 보험가입금액의 한도액이 명시되어 있음에도 그 한도액을 초과하여 청약을 하고 청약을 승낙하기 전에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초과계약에 대하여는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5)보험기간중 피보험자가 사망하거나 제1급의 장해상태가 된 경우에는 이 계약은 그 때부터 효력을 가지지 아니합니다

제3조의 2 【회사가 제작한 보험안내장등의 효력】

보험을 모집한 자 (이하 “모집인등” 이라 합니다)가 모집과정에서 사용한 회사(영업국, 영업소 및 대리점 포함) 세각의 보험안내장(서류, 사진, 도화 등 모든 안내자료 포함) 내용이 이 약관의 내용과 다른 경우에는 계약자에게 유리한 내용으로 계약이 성립된 것으로 봅니다.

제4조 【계약불성립시의 보험료의 반환】

- (1) 회사가 제1회보험료를 받고 승낙을 거친 경우에는 거절통지와 함께 받은 금액을 돌려 드리고, 계약자가 청약을 철회한 때에는 3일이내에 그 보험료를 돌려 드립니다.
- (2) 계약자가 청약을 철회한 경우에는 제1항의 반환기일의 다음날로부터 반환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회사의 약관대출이율로, 회사가 청약에 대한 승낙을 거친 경우에는 보험료를 받은 기간에 대하여 8.5%를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드립니다.

제4조의 2 【약관교부 및 중요한 내용의 설명의무】

- (1) 회사는 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자에게 약관을 드리고 그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여 드립니다.
- (2) 계약자가 청약시까지 약관의 전달 및 그 중요한 내용을 설명받지 못한 것을 이유로 청약일로부터 3개월이내에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드리며 보험료를 받은 기간에 대하여 회사의 약관 대출 이율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드립니다.

제5조 【보험수익자의 지정】

이 계약에서 계약자가 보험수익자 (이하 “수익자” 라 합니다)를 지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수익자를 제7조 (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경우는 계약자로 하고 동조 동항 제3호 내지 제7호의 경우는 피보험자로 하며, 피보험자의 사망시는 피보험자의 상속인으로 합니다.

제5조의 2 【대표자의 지정】

- (1) 계약자 또는 수익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각 대표자 1인을 지정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그 대표자는 각각 다른 계약자 또는 수익자를 대리하는 것으로 합니다.
- (2) 제1항의 대표자가 지정되지 아니하였거나 지정된 계약자 또는 수익자의 소재가 확실하지 아니한 경우에 이 계약에 관하여 회사가 계약자 또는 수익자 1인에 대하여 한 행위는 각각 다른 계약자 또는 수익자에 대하여도 효력이 미칩니다.
- (3) 계약자가 2인이상인 경우에는 그 책임을 연대(連帶)로 합니다.

제6조 【계약의 무효】

- 다음중 한가지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계약을 무효로 하며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드립니다.
1. 타인의 사망을 보험금 지급사유로 하는 계약에서 계약체결시까지 피보험자의 서면에 의한 동의를 얻지 아니한 경우
 2. 만15세미만자, 심신상실자(心神喪失者) 또는 심신박약자(心神薄弱者)를 피보험자로 한 경우

제7조 【보험금의 지급사유】

- (1) 회사는 피보험자에게 다음 사항중 어느 한가지의 경우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수익자에게 약정한 보험금(별표1 “보험금 지급기준 표” 참조)를 지급합니다.
1. 보험기간이 끝날때까지 피보험자가 살아있을 경우 만기보험금 지급
 2. 보험계약 가입 1년후부터 매년 보험계약해당일에 피보험자가 살아있을 경우 (단, 만기시 및 보험료 납입완료 1년후 계약해당일부터는 제외)
생활여유자금 지급
 3. 보험기간중 피보험자가 재해이외의 원인으로 인하여 사망하거나 제1급

의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

일반사망보험금과 그때까지 적립한 책임준비금 지급

4 보험기간중 피보험자가 교통재해이외의 재해로 인하여 사망하거나 재1급의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

. 일반재해사망보험금과 그 때까지 적립한 책임준비금 지급

5 보험기간중 피보험자가 교통재해로 인하여 사망하거나 제1급의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

: 교통재해사망보험금과 그 때까지 적립한 책임준비금 지급

6.보험기간중 피보험자가 재해로 인하여 제2급 내지 제6급의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 · 재해장해급여금 지급

7.보험기간중 피보험자가 교통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4일이상 입원하였을 때 · 교통재해응급치료자금 지급

(2)제1항의 경우 피보험자가 생사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실종선고(失踪宣告)가 있거나 재해로 인하여 사망한 것으로 정부기관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망한 것으로 봅니다.

(3)제1항 제4호 내지 제6호의 경우 장해상태의 등급이 재해일로부터 180일이내에 확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180일이 되는 날 현재의 장해진단을 기준으로 장해상태의 등급을 결정합니다.

(4)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계약이 유효한 기간중에 피보험자에게 재해가 발생하고 계약의 효력이 없어진 경우에도 재해일로부터 180일이내에 그 재해로 인하여 제1항 제4호 내지 제6호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회사가 책임을 집니다

(5)제1항 제6호의 경우 피보험자가 보험기간중 동일한 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두 종목 이상의 장해를 입었을 경우 그 각각에 해당하는 재해장해급여금을 수의자에게 드립니다.

그러나 그 장해상태가 신체의 동일부위에서 발생한 경우에는 최상위의 등급에 해당하는 재해장해급여금만을 드립니다

(6)제5항에 규정한 재해장해급여금의 지급사유가 다른 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하여 2회이상 발생하였을 때에는 그 때마다 이에 해당하는 재해장해급여금을 수의자에게 드립니다.

그러나 그 장해가 이미 재해장해급여금을 지급 받은 동일부위에 가중된 장해일 때에는 새로 발생된 장해에 해당하는 재해장해급여금에서 이미 지급한 재해장해급여금을 뺀 차액을 드립니다

(7)제5항에 있어서 그 재해전에 이미 다음중 한 가지의 경우에 해당되는

장해가 있었던 피보험자에게 그 신체의 동일 부위에 또 다시 제6항에 규정하는 장해상태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다음중 한가지의 경우에 해당되는 장해에 대해서는 이미 재해장해급여금이 지급된 것으로 보고 제6항 후단의 규정을 적용합니다

- 1.이 보험의 책임개시전의 원인에 의하거나 또는 그 이전에 발생한 장해로 재해장해급여금의 지급사유가 되지 않았던 장해
- 2.전호 이외에 이 보험의 규정에 의하여 재해장해급여금의 지급사유가 되지 않았던 장해 또는 재해장해급여금이 지급되지 않았던 장해

제8조 【입원의 정의와 장소】

이 계약에 있어서 “입원”이라 함은 대한민국내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 의사의 자격을 가진 자 (이하 “의사”라 합니다)에 의하여 교통재해로 인한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로서 자택 등에서의 치료가 곤란하여 의료법 제 3조 제 2항에 규정된 병원 또는 의원 또는 이와 동등하다고 회사가 인정하는 국외의 의료기관에 입실하여 의사의 관리하에 치료에 전념하는 것을 말합니다.

제9조 【배당금의 지급】

회사는 재정경제원장관이 인정하는 방법에 따라 계약자에게 배당금을 드립니다

제10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보험사고】

(1)회사는 다음중 어느 한 가지의 경우에 의하여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드리지 아니함과 동시에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 1.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그러나,피보험자가 정신질환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와 계약의 책임

개시일 (부활계약의 경우는 부활청약일)로부터 2년이 경과된 후에
자살하거나 자신을 해침으로써 장해분류표증 제1급의 장해상태가 되었
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2. 수의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그러나, 그 수의자가 보험금의 일부 수의자인 경우에는 그 잔액을 다른
수의자에게 드립니다

3. 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2) 제1항 각호의 사유로 인하여 회사가 이 계약을 해지하거나 계약이 더
이상 효력이 없어지는 때에는 다음과 같이 합니다.

1. 제1항 제1호의 경우에는 계약자에게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 드립
니다.

2. 제1항 제2호의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 보험금에 해당하는 해약환급
금을 드립니다.

3. 제1항 제3호의 경우에는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 드리지 아니합
니다.

제11조 【전쟁, 기타 범란시의 보험금】

회사는 피보험자가 전쟁, 기타 범란으로 인하여 사망하거나 장해분류표증
제1급 내지 제6급의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 그 수가 보험료 산출기초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재정경제원장관의 인가
를 얻어 보험금을 감액하여 드립니다

제12조 【가입자의 고지의무】

(1)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청약서 (건강진단을 받는 경우에는 건강진단
서 포함) 청약서에서 질문한 사항에 대하여 알고 있는 사실을 반드시 사
실대로 알려야 (이하 "고지의무" 라 합니다) 합니다

그러나 의료법 제3조의 종합병원 및 병원에서 직장 또는 개인이 실시한
건강진단서 사본등 건강상태를 판단할 수 있는 자료로 건강진단을 대신
할 수 있습니다.

(2)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보험금 지급 사유 발생에 영향을 미치는 제 1항의 고지의무를 위반한 때에는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여부에 관계없이 회사는 계약을 해지(解止)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음중 한 가지의 경우에 해당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1. 회사가 계약당시에 그 사실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알지 못하였을 때
2. 회사가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1개월이상 지났거나 또는 책임개시일로부터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지 아니하고 2년 (건강진단을 받은 피보험자의 경우에는 1년) 이상 지났을 때
3. 회사가 이 계약의 청약시 피보험자의 건강상태를 판단할 수 있는 기초자료 (건강진단서 사본등)에 의하여 승낙통지를 한 때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회사에 제출한 기초자료의 내용 중 중요사항을 고의로 사실과 다르게 작성한 때에는 제외)
4. 피보험자의 직업 또는 직종에 관하여 사실대로 알리지 아니한 경우 (청약서에 명시되어 있는 승낙거절 직업 또는 직종은 제외)
5. 모집인등이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고지의무사항을 임의로 기재한 경우 (청약서에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자필로 서명한 경우는 제외)

(3) 제2항에 의하여 계약을 해지하였을 때에는 해약환급금 또는 이미 납입한 보험료중 많은 금액을 지급합니다.

(4)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청약시에 피보험자의 직업 또는 직종에 관한 고지의무를 위반함으로써 청약서에 명시되어 있는 보험가입한도액을 초과한 경우, 회사는 보험금지급사유의 발생여부에 관계없이 보험가입한도액으로 감액하며, 그 초과가입액에 대한 보험료는 돌려드립니다.

(5) 제1항의 고지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보험금지급사유 발생에 영향을 미쳤음을 회사가 증명하지 못한 경우에는 해당 보험금을 드립니다.

제13조 【계약취소권의 행사 제한】

회사는 책임개시일로부터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지 아니하고 2년 (건강진단을 받은 피보험자의 경우에는 1년) 이상 지났을 때에는 민법 제110조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에 의한 취소권을 행사하지 아니합니다.
그러나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대리전단, 약불복용을 수단으로 전단

절차를 통과하거나 전단서 위·변조 또는 청약일 이전에 암 또는 에이즈의 진단화정을 받은 후 이를 숨기고 가입하는 등의 뚜렷한 사기의사에 의하여 계약이 성립되었음을 회사가 증명하는 경우에는 책임개시일로부터 5년이내 (사기사실을 안 날로부터는 1개월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제 14조 【보험료의 납입】

- (1) 제2회이후의 보험료는 납입기간중 계약자가 납입기일까지 납입하여야 하며, 이 경우 회사가 발행한 영수증을 받아야 합니다
단, 금융기관 (우체국 포함)을 통하여 보험료를 납입한 경우에는 그 금융기관 발행 증빙서류를 영수증으로 대신합니다
- (2) 계약자가 보험료 납입기간중 문서로 보험료의 수금방법의 변경을 요구할 경우에는 회사는 그 방법을 변경하여 드립니다
- (3) 보험료를 선납할 경우에는 선납보험료는 당월분을 포함하여 12개월분 이하의 보험료를 선납할 때에 한하며, 선납보험료는 약정보험료의 배수로 납입하여야 합니다

제15조 【보험금 지급사유의 발생통지】

수익자는 제7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 정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회사에 알여야 합니다.

제16조 【주소변경 통지】

- (1) 계약자는 주소 또는 연락처가 변경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이를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 (2) 제1항의 정반대로 계약자가 알리지 않은 경우 회사가 알고 있는 회종의 주소로 알린 사항은 일반적으로 도달에 필요한 시일이 지난 때에는 계약자에게 도달한 것으로 봅니다.

제 17조 【보험료의 납입연체시 계약의 효력】

(1) 제2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기일로부터 납입기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를 보험료 납입유예기간(이하 “유예기간 (猶豫期間)”이라 합니다)으로 하며, 계약자가 유예기간이 끝날 때까지 보험료를 납입치 아니한 경우에는 유예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날부터 이 계약은 더 이상 효력을 가지지 아니합니다.

이 경우 계약자의 청구에 의하여 회사는 해약환급금을 드립니다.

(2) 보험료 수금방법이 회사의 방문수금 또는 계약자의 은행수납방법으로 약정되어 있는 경우에 회사의 수금불이행 또는 은행납입통지서의 미교부로 인하여 계약자가 보험료를 납입하지 못한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1항의 납입기일로부터 3개월이 되는 날까지 계약은 계속 효력을 기집니다. 다만, 회사가 다시 수금하기로 하거나 은행납입통지서를 다시 교부하기로 한 경우에는 그 수급 또는 재교부일로부터 15일이 되는 날을 새로운 납입기일로 하여 제1항을 적용합니다.

(3) 회사는 보험료 납입기일까지 보험료를 납입하지 아니한 경우 계약자 (타인을 위한 보험의 경우 특정된 수익자 포함)에게 유예기간이 끝나기 10일이전까지 제1항의 내용을 서면으로 알려드립니다.

제 18조 【효력상실된 계약의 부활】

(1) 계약이 효력상실(效力喪失)되었을 경우 계약자는 효력상실일로부터 2년이내에 회사가 정한 절차에 따라 계약의 부활(復活)을 청약할 수 있으며, 회사가 이를 승낙한 때에는 부활을 청약한 날까지의 연체보험료에 회사가 정하는 이율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납입하여야 합니다.

(2) 부활되는 계약의 책임개시, 승낙거절시의 보험료반환 및 고지의무는 제3항, 제3조(계약의 효력), 제4조(계약불성립시의 보험료의 반환) 및 제12조(가입자의 고지의무)의 규정을 따릅니다

제 19조 【보험금등 청구시 구비서류】

- (1) 수의사 또는 계약자는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고 보험금 또는 해약환급금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1. 청구서 (회사양식)
 2. 사고증명서 (사망진단서, 장해진단서, 입·퇴원확인서 등)
 3. 보험증권
 4. 주민등록증 제시 (본인이 아닌 경우는 본인의 인감증명서)
 5. 기타, 수의사가 보험금 등의 수령에 필요하여 제출하는 서류
- (2) 병원 또는 의원에서 제1항 제2호의 사고증명서를 발급받을 경우, 그 병원 또는 의원은 의료법 제3조 제2항에서 정한 국내의 병원이나 의원 또는 이와 동등하다고 회사가 인정하는 국외의 의료기관을 말합니다

제20조 【보험금등의 지급】

- (1) 회사는 제19조(보험금 등 청구시 구비서류)에 정한 서류를 접수한 때에는 접수증을 교부하고, 그 서류를 접수한 날로부터 3일이내에 보험금 또는 해약환급금을 드립니다
다만, 보험금의 경우 지급사유의 조사나 확인이 필요한 때에는 접수후 10일이내에 드립니다
- (2)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수의사는 제12조(가입자의 고지의무)와 관련하여 의료기관등에 대한 회사의 조사에 동의하여야 합니다.
- (3) 회사가 제1항의 지급사유 조사나 확인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피보험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회사가 지정한 의사의 진단, 의료비의 심사, 기타의 조사를 받을 것(진단에 필요한 검사자료 등의 제출을 포함합니다)에 동의하여야 하며, 피보험자가 지정한 의사와 회사가 지정한 의사가 진단 및 진료내용, 입원기간 등에 대하여 합의하여 정하는 때에는 그에 따라 보험금 또는 급여금을 지급합니다. 그러나 피보험자의 의사와 회사의 의사가 합의에 도달하지 못하는 때에는, 피보험자와 회사가 동의하여 제3의 의사를 정하고 그 제3의 의사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이 약관에서 "회사가 지정한 의사" 및 "제3의 의사"는 의료보험법에서 정하는 제3차 진료기관중에서 정하며, 이 항의 규정에 의한 의료비용은 회사가 부담합니다.
- (4) 제1항 내지 제3항에서 규정한 회사의 조사, 확인 또는 진단요청에 대하

여, 계약자, 피보험자나 수익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동의를 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 동의를 얻어 조사, 확인 또는 진단을 완료할 때까지 보험금 또는 급여금의 지급을 유예할 수 있습니다.

(5) 회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급기일내에 보험금 또는 해약환급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그 지급기일의 다음날부터 지급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회사의 약관대출 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드립니다.

(6) 이 약관에 의한 해약환급금은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합니다

이때, 적용되는 해지이율은 보험계약일로부터 보험료 납입 경과기간이 1년미만은 「이 보험의 약관대출이율 - 6.0%」, 2년미만은 「이 보험의 약관대출이율 - 5.5%」, 3년미만은 「이 보험의 약관대출이율 - 4.5%」, 4년미만은 「이 보험의 약관대출이율 - 3.5%」, 5년미만은 「이 보험의 약관대출이율 - 2.5%」, 5년이상은 「이 보험의 약관대출이율 - 1.5%」, 의 이율을 적용하며, 이 보험의 약관대출이율이 변경될 경우에는 변경된 날로부터 변경된 이 보험의 약관대출이율을 적용합니다

(7) 회사는 생활여유자금 및 만기보험금의 지급시기가 도래할 때에는 도래일 7일이전에 그 사유와 회사가 지급하여야 할 금액을 알려 드립니다

(8) 생활여유자금은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날로부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급기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해약환급금에 적용되는 해지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드립니다

(9) 만기보험금 및 해약환급금은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날로부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급기일까지의 기간의 대하여 8.5%를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드립니다.

제21조 【보험금 수령방법의 선택】

(1) 계약자(보험금 지급사유 발생후에는 수익자)는 회사의 사업방법서에 정한 바에 따라 제7조(보험금의 지급시유) 제1항 제3호 내지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사망보험금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제20조(보험금등의 지급) 규정에 의한 일시금으로 지급받는 이외에 다른 지급방법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2)회사는 제 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자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후에는 수익자)의 요청에 의하여 그 지급방식을 변경한 때에는 그 미지급금액에 대하여 8.5%를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드립니다.

제22조 【계약내용의 변경】

(1)계약자는 회사의 승낙을 얻어 다음의 사항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승낙을 서면으로 알리거나 보험증권의 뒷면에 기재하여 드립니다

- 1.납입보험료
- 2.계약자 또는 수익자
- 3.기타 계약의 내용

(2)회사는 계약자가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납입보험료를 감액하고자 할 때에는 그 감액된 부분은 해약된 것으로 보며, 이로 인하여 회사가 지급하여야 할 해약환급금이 있을 때에는 제20조(보험금등의 지급) 제6항에 따라 이를 계약자에게 드립니다

(3)계약자가 제1항 제2호중 수익자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보험금의 지급사유가 발생하기전에 피보험자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4)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계약자의 변경은 계약자가 사망, 파산, 이민 또는 이혼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계약을 유지시킬 수 없는 경우에 가능합니다.

제23조 【계약자의 임의해지】

계약자는 보험계약이 소멸하기 전에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회사는 해약환급금을 드립니다

제24조 【약관대출】

(1)계약자는 이 계약의 해약환급금 범위내에서 회사가 정한 방법에 따라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2) 제약자는 제 1항의 규정에 의한 약관대출금과 그 이자를 언제든지 상환할 수 있으며 상환하지 아니한 때에는 보험금, 해약환급금 등의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에 제지금금에서 상계하는 방법으로 회수합니다.
- (3) 회사가 약관대출이자의 납입지연등을 이유로 약관대출 내상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지 10일전까지 계약자에게 그 내용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합니다.

제25조 【계약내용의 교환】

회사는 계약자의 동의를 받아 다음의 사항을 다른 회사에 제공할 수 있습니다

1. 계약자·피보험자 및 수익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2. 계약일, 보험증목
3. 보험가입금액, 보험금과 각종 급부금의 금액 및 지급사유

제 26조 【회사의 손해배상 책임】

회사는 계약과 관련하여 임·직원, 보험인 및 대리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하여 발생된 손해에 대하여 관계법규 및 사업방법서에서 정한 바에 따라 손해배상의 책임을 집니다.

제 27조 【분쟁의 조정】

계약에 관하여 분쟁이 있는 경우 분쟁당사자 또는 기타 이해관계인과 회사는 보험감독원장에게 그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제 28조 【관할법원】

이 계약에 관한 소송은 계약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으로 합니다

다만, 회사와 계약자가 합의에 의하여 판할법원을 따로 정할 수 있습니다

제 29조 【보험보증기금의 지급보장】

계약자 및 보험료 납부자가 법인이 아닌 계약에 대하여는 회사가 과산등으로 인하여 보험금 등을 지급하지 못할 경우 보험보증기금이 1인당 5천 만원 한도내에서 그 지급을 보장합니다.

제 30조 【준거법】

이 약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대한민국 법령을 따릅니다.

(별 표 1)

보험금 지급기준표

급여명	지급사유	지급액
만기보험금 (약관 제7조 제1항 제1호)	보험기간이 끝날 때까지 피보험자가 살아있을 경우	책임준비금
생활여유자금 (약관 제7조 제1항 제2호)	보험계약 가입1년후부터 매년 보험계약해당일에 피보험자가 살아있을 경우 (단, 만기시 및 보험료 납입완료 1년후 계약 해당일부터는 제외)	매년 전년도 납입보험료의 50 %
일반사망 보험금 (약관 제7조 제1항 제3호)	보험기간중 피보험자가 재해이외의 원인으로 인하여 사망하거나 제1급 의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	200 만원 + 책임준비금
일반재해 사망보험금 (약관 제7조 제1항 제4호)	보험기간중 피보험자가 교통재해이외의 재해로 인하여 사망하거나 제1급 의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	500 만원 + 책임준비금
교통재해 사망보험금 (약관 제7조 제1항 제5호)	보험기간중 피보험자가 교통재해로 인하여 사망하 거나 제1급의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	1,000 만원 + 책임준비금

급여명	지급사유	지급액
재해 장해급여금 (약관 제7조 제1항 제6호)	보험기간중 피보험자가 재해로 인하여 제2급 내지 제6급의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	제 2급 350 만원 제 3급 250 만원 제 4급 150 만원 제 5급 75 만원 제 6급 . 50 만원
교통재해 응급치료지급 (약관 제7조 제1항 제7호)	보험기간중 피보험자가 교통재해를 직접적인 원인 으로 4일이상 계속하여 입원하였을 때	20 만원

(주) 「책임준비금」이란 이 계약의 적립계약 순보험료를 「이 보험의 약관
대출이율-1.5%」로 납입일로부터 일자 계산에 의하여 부리한 금액에서
생활여유자금을 지급하고 남은 금액을 부리 적립한 금액

(별 표 2)

재 해 분 류 표

재해라 할은 우발적인 외래의 사고 (다만, 질병 또는 체질적 요인이 있는 자로서 경미한 외부요인에 의하여 발병하거나 또는 그 증상이 더욱 악화되었을 때에는 그 경미한 외부 요인은 우발적인 외래의 사고로 보지 아니함)로서 다음 분류표에 따른 사고를 말한다.

* 이 분류는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통계청 고시 제 1993-3호, 1995.1.1 시행) 중 “질병이환 및 사망의 원인”에 의한 것임

분 류 항 목	분류번호
1 운수사고에서 다친 보행인	V01 ~V09
2 운수사고에서 다친 자전거 탑승자	V10 ~V19
3. 운수사고에서 다친 모터사이클 탑승자	V20 ~V29
4. 운수사고에서 다친 삼륜자동차량의 탑승자	V30 ~V39
5. 운수사고에서 다친 승용차 탑승자	V40 ~V49
6. 운수사고에서 다친 픽업 트럭 또는 벤 탑승자	V50 ~V59
7. 운수사고에서 다친 대형화물차 탑승자	V60 ~V69
8 운수사고에서 다친 버스 탑승자	V70 ~V79
9 기타 육상운수 사고 (철도사고 포함)	V80 ~V89
10. 수상 운수사고	V90 ~V94
11 항공 및 우주 운수사고	V95 ~V97
12. 기타 및 상세불명의 운수사고	V98 ~V99
13 추락	W00 ~W19
14. 무생물성 기계적 힘에 노출	W20 ~W49
15. 생물성 기계적 힘에 노출	W50 ~W64
16. 불의의 의수	W65 ~W74
17. 기타 불의의 호흡 위협	W75 ~W84
18. 전류, 방사선 및 극순환 기운 및 압력에 노출	W85 ~W99
19. 연기, 불 및 화염에 노출	X00 ~X09
20 열 및 가열된 물질과의 접촉	X10 ~X19

분류항목	분류번호
21. 유독성 물질 및 식물과의 접촉	X20~X29
22. 자연의 힘에 노출	X30~X39
23. 유독물질에 의한 불의의 중독 및 노출	X40~X49
24. 기타 및 상세불명의 요인에 불의의 노출	X58~X59
25. 가해	X85~Y09
26. 의도 미확인 사건	Y10~Y34
27. 법적개입 및 전쟁행위	Y35~Y36
28. 치료시 부작용을 일으키는 약물,약제 및 생물학 물질	Y40~Y59
29. 외과적 및 내과적 치료중 환자의 재난	Y60~Y69
30. 진단 및 치료에 이용되는 의료장치에 의한 부작용	Y70~Y82
31. 처치 당시에는 재난의 언급이 없었으나 환자에게 이상반응이나 후에 합병증을 일으키게 한 외과적 및 내과적 처치	Y83~Y84
32. 전염병 예방법 제2조 제1항 제1종에 규정한 질병	

※ 제외사항

- “약물 및 의약품에 의한 불의의 중독” 중 외용약 또는 약물 접촉에 의한 알레르기 피부염 (L23.3)
- “기타 고체 및 액체물질,가스 및 증기에 의한 불의의 중독” 중 한국 표준질병시인분류상 A00~R99에 분류가 가능한 것
- “외과적 및 내과적 치료중 환자의 재난” 중 진료기관의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사고
- “자연 및 환경요인에 의한 불의의 사고” 중 급격한 액체손실로 인한 탈수
- “의수,질식 및 이울에 의한 불의의 사고” 중 질병에 의한 호흡장해 및 삼킴장애
- “기타 불의의 사고” 중 파로 및 격렬한 운동으로 인한 사고
- “법적 개입” 중 처형 (Y35.5)

(별표 3)

장해등급분류표

등급	신체장해
제1급	<p>1. 두눈의 시력을 완전 영구히 잃었을 때 2. 말 또는 씹어먹는 기능을 완전 영구히 잃었을 때 3. 중추신경계 또는 정신에 뚜렷한 장해를 남겨서 평생토록 항상 간호를 받아야 할 때 4. 총복부, 장기에 뚜렷한 장해를 남겨서 평생토록 항상 간호를 받아야 할 때 5. 두팔의 손목이상을 잃었거나 완전 영구히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 6. 두다리의 발목이상을 잃었거나 완전 영구히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 7. 한팔의 손목이상을 잃고, 한다리의 발목이상을 잃었을 때 8. 한팔의 손목이상을 잃고, 한다리를 완전 영구히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 9. 한다리의 발목이상을 잃고, 한팔을 완전 영구히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p>
제2급	<p>1. 중추신경계 또는 정신에 뚜렷한 장해를 남겨서 평생토록 수시 간호를 받아야 할 때 2. 총복부 장기에 뚜렷한 장해를 남겨서 평생토록 수시간호를 받아야 할 때 3. 한팔 및 한다리를 완전영구히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 4. 10손가락을 잃었거나 완전 영구히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 5. 한팔 또는 한다리중에서 제3급의 2부터 7까지중의 신체장애가 생기고 다른 한팔 또는 한다리중에서 제3급의 2부터 7까지중 또는 제4급의 5부터 11까지 중에서 신체장애가 발생되었을 때 6. 두귀의 청력을 완전 영구히 잃었을 때</p>

등급	신체장애
제3급	<p>1. 한눈의 시력을 영구히 잃었을 때 2. 한팔의 손목이상을 잃었을 때 3. 한팔 또는 한팔의 3대관절중 2관절을 완전 영구히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 4. 한다리의 발목이상을 잃었을 때 5. 한다리 또는 한다리의 3대관절중 2관절을 완전 영구히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 6. 한손의 5손가락을 잃었을 때 7. 한손의 첫째손가락 및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4손가락을 잃었을 때 8. 10발가락을 잃었을 때 9. 척추에 뚜렷한 기형 또는 심한 운동장해를 영구히 남겼을 때</p>
제4급	<p>1. 두눈의 시력에 각각 뚜렷한 장해를 영구히 남겼을 때 2. 말 또는 씹어먹는 기능에 뚜렷한 장해를 영구히 남겼을 때 3. 중추신경계 또는 정신에 뚜렷한 장해를 남겨서 평생 일상 생활 기본동작에 제한을 받게 되었을 때 4. 흉복부, 장기에 뚜렷한 장해를 남겨서 평생 일상생활 기본 동작에 제한을 받을 때 5. 한팔의 3대관절중 1관절을 완전 영구히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 6. 한다리의 3대관절중 1관절을 완전 영구히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 7. 한다리가 영구히 5cm이상 단축되었을 때 8. 한손의 첫째손가락 및 둘째손가락을 잃었을 때 9. 한손의 첫째손가락 또는 둘째손가락중 1손가락을 포함하여 3손가락 이상을 잃었을 때 10. 한손의 5손가락을 완전 영구히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p>

등급	신체장애
제4급	<p>11. 한손의 첫째손가락 및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3손가락 이상을 완전 영구히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p> <p>12. 10발가락을 완전 영구히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p> <p>13. 한발의 5발가락을 잃었을 때</p> <p>14. 한귀의 청력을 영구히 잃고 다른 귀의 청력에 뚜렷한 장해를 영구히 남겼을 때</p> <p>15. 척추에 뚜렷한 운동장애를 영구히 남겼을 때</p>
제5급	<p>1. 비장 또는 한쪽의 신장을 상실한 때</p> <p>2. 한팔의 3대관절중 2관절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를 영구히 남겼을 때</p> <p>3. 한다리의 3대관절중 2관절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를 영구히 남겼을 때</p> <p>4. 한손의 첫째손가락 또는 둘째손가락을 잃었을 때</p> <p>5. 한손의 첫째손가락 또는 둘째손가락중 1손가락을 포함하여 2손가락을 잃었을 때</p> <p>6. 한손의 첫째손가락 및 둘째손가락 이외의 3손가락을 잃었을 때</p> <p>7. 한손의 첫째손가락 및 둘째손가락을 완전 영구히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p> <p>8. 한손의 첫째손가락 또는 둘째손가락중 1손가락을 포함하여 3손가락 이상을 완전 영구히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p> <p>9. 한발의 5발가락을 완전 영구히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p> <p>10. 한발의 첫째발가락을 포함하여 2발가락 내지 4발가락을 잃었을 때</p> <p>11. 두귀의 청력에 뚜렷한 장해를 영구히 남겼을 때</p> <p>12. 한귀의 청력을 완전 영구히 잃었을 때</p> <p>13. 코가 결손되고 그 기능에 뚜렷한 장해를 영구히 남겼을 때</p> <p>14. 척추에 운동장애를 영구히 남겼을 때</p>

등급	신체장애
제6급	<p>1. 한눈의 시력에 뚜렷한 장해를 영구히 남겼을 때</p> <p>2. 한팔의 3대관절중 1관절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를 영구히 남겼을 때</p> <p>3. 한다리의 3대관절중 1관절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를 영구히 남겼을 때</p> <p>4. 한다리가 영구히 3cm이상 단축되었을 때</p> <p>5. 한손의 첫째손가락 또는 둘째손가락을 완전 영구히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을때</p> <p>6. 한손의 첫째손가락 또는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2손가락을 완전 영구히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p> <p>7. 한손의 첫째손가락 및 둘째손가락 이외의 2손가락 이상을 완전 영구히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p> <p>8. 한손의 첫째손가락 또는 둘째손가락 이외의 1손가락 또는 2손가락을 잃었을 때</p> <p>9. 한발의 첫째발가락 또는 다른 4발가락을 잃었을 때</p> <p>10. 한발의 첫째발가락을 포함하여 3발가락이상을 완전 영구히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p>

(장해 등급 분류 해설)

1. "항상간호"

항상 타인의 간호 없이는 생명의 유지가 불가능한 경우 또는 고도의 치매 등으로 인하여 항상 타인의 간호가 필요한 경우를 말한다

2. "수시간호"

"수시간호"란 다음의 경우를 말한다.

- 1) 생명의 유지를 위하여 수시로 타인의 간호가 필요한 경우
- 2) 정신장해로 인하여 자택 밖의 행동이 곤란하여 수시로 타인의 보호가 필요한 경우
- 3) 심장, 신장 또는 간장의 장기이식을 한 경우 또는 장기이식을 하지 않고서는 생명 유지가 불가능하여 혈액투석등 의료처치를 평생

토록 받아야 할 때

3. "일상생활 기본동작의 제한"

음식을 섭취, 배변·배뇨, 거동·보행 또는 목욕등을 하는데 있어 평생 심한 불편을 당하는 경우 또는 정신장애로 인하여 생활적응능력이 떨어져 평생 정상적인 생활을 영위하는데 있어 심한 불편을 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4. "시력을 잃은 것"

시력이 0.02 이하 (시력의 측정은 국제식 시력검사표에 따라 한눈씩 교정시력에 대하여 측정함)로 되어 회복되지 않는 경우를 말한다.

5. "시력의 뚜렷한 징해"

시력이 0.06 이하 (시력의 측정은 국제식 시력검사표에 따라 한눈씩 교정시력에 대하여 측정함)로 되어 회복되지 않는 경우를 말한다

6. "말 또는 씹어먹는 기능을 잃은 것"

가."말의 기능을 완전영구히 잃은 것" 이란 다음의 경우를 말한다

1) 말과 소리내는 기능장애로서 구순음(ㅁ,ㅂ,ㅍ), 치설음(ㄴ,ㄷ,ㄹ), 구개음(ㅈ,ㅊ), 후두음(ㅇ,ㅎ) 중 3종류이상의 발음이 불가능하고 그 회복이 되지 않는 경우

2) 뇌언어증후의 손상으로 인한 실어증으로서 음성언어에 의한 의사 소통이 불가능하고 그 회복이 되지 않는 경우

3) 성대 전부를 떼어냄으로서 발음이 불가능한 경우

나."씹어먹는 기능을 완전영구히 잃은 것"

물이나 유동식 (미음등) 이외의 것은 섭취할 수 없는 상태로서 그 회복이 불가능한 경우를 말한다

7. "말 또는 씹어먹는 기능의 뚜렷한 징해"

가."말의 기능에 뚜렷한 징해를 영구히 남긴 것"

말과 소리를 내는 기능의 장해로서 구순음, 치설음, 구개음, 후두 음 중 2종류 이상의 발음이 불가능하고 회복이 되지 않는 경우를 말한다.

나."씹어먹는 기능에 뚜렷한 장해를 영구히 남긴 것"

즉 또는 이에 준하는 음식이외의 것은 섭취할 수 없는 상태로서 그 회복이 불가능한 경우를 말한다

8. "청력을 완전영구히 잃은 것"

주파수 500, 1000, 2000, 4000 헬스의 경우에 청력상실의 정도를

각

각 a,b,c,d 테시벨(청력검사 단위)로 했을 때 $1/6 (a + 2b + 2c + d)$

의 값이 80데시벨(청력검사단위) 이상(귓전에 접하여도 큰소리를 듣지 못하는 것)으로서 회복이 불가능한 경우를 말한다.

9. "청력의 뚜렷한 장해"

위의 방법에 따른 값이 60데시벨 (청력검사단위) 이상 (40cm 이상의 거리에서 보통의 말소리를 해독하지 못하는 것)으로서 회복이 불가능한 경우를 말한다

10. "코의 결손과 뚜렷한 장해"

코뼈가 결손된 경우로서 양코로 숨쉬는 것이 곤란하거나 또는 후각기능을 잃고 그 회복이 불가능한 경우를 말한다

11. "팔다리를 완전 영구히 사용하지 못하는 것"

팔다리의 운동기능을 완전히 잃은 것을 말하며, 팔다리의 완전 운동마비 또는 팔다리 각각의 3 대관절(팔은 어깨관절·팔꿈치관절·손목,다리는 골반관절·무릎·발목)의 완전강직으로 그 회복이 불가능한 경우를 말한다.

관절을 영구히 쓸수 없는 경우 (인공관절 포함) 예도 이에 준한다.

12. "팔다리 관절의 뚜렷한 장해"

팔다리 각각의 3 대관절의 운동기능 영역이 생리적 운동영역의 1/2이하로 제한된 경우와 보행에 상당한 제한이 있는 등요관절의 경우를 말한다.

13. "척추의 뚜렷한 기형 또는 운동장해"

가."척추의 뚜렷한 기형"

통상의 의복을 착용하여도 외부로부터 보아서 확실히 알수 있는 정도 이상의 것을 말한다

나 "척추의 심한 운동장애"

목뼈 또는 가슴등뼈 이하가 전후굽하기, 좌우굽하기 및 좌우회전운동 중 2종류 이상의 운동이 생리적 범위의 $1/4$ 이하로 제한되는 경우를 말한다.

다."척추의 뚜렷한 운동장애"

목뼈 또는 가슴등뼈 이하가 전후굽하기, 좌우굽하기 및 좌우회전운동 중 2종류 이상의 운동이 생리적 범위의 $1/2$ 이하로 제한된 경우를 말한다

라. "척추의 운동장애"

목뼈 또는 가슴등뼈 이하가 전후굽하기, 좌우굽하기 및 좌우회전운동 중 2종류 이상의 운동이 생리적 범위의 $3/4$ 이하로 제한되는 경우를 말한다

14."손가락의 징후"

가 "손가락을 잃은 것"

첫째 손가락은 자절간관절(끝에서 첫째 마디), 기타의 손가락은 근위자절간관절(끝에서 둘째 마디) 이상을 잃은 것을 말한다

나 "손가락을 완전 영구히 사용하지 못하는 것"

손가락의 원위자절간관절(끝에서 첫째마디) [첫째 손가락은 말절골(끝에서 첫째마디)의 $1/2$] 이상을 잃은 경우 또는 손가락의 중수자절관절(끝에서 마지막마디) 또는 근위자절간관절(끝에서 둘째마디) [첫째 손가락은 자절간관절(끝에서 첫째마디)] 이 완전 강직되고, 그 회복이 불가능한 경우를 말한다

15."발가락의 징후"

가."발가락을 잃은 것"

발가락 전부(첫째발가락의 경우 말절골 이상)를 잃은 것을 말한다

나 "발가락을 완전 영구히 사용하지 못하는 것"

첫째 발가락은 말절골(끝에서 첫째마디)의 $1/2$ 이상 그외 발가락은 원위자절간관절(끝에서 첫째마디) 이상을 잃은 경우거나 증족지질관절(끝에서 마지막마디) 또는 근위자절간관절(끝에서 둘째마디) [첫째 발가락은 자절간관절(끝에서 첫째마디)] 이 완전 강직되고,

그 회복이 불가능한 경우를 말한다

16."신체의 동일부위"

- 가). 한팔에 대하여는 어깨관절이하(손가락, 손목이하, 팔꿈치이하, 어깨이하)를 모두 동일부위라 한다
- 나. 한다리에 대하여는 골반관절이하(발가락, 발목이하, 무릎이하, 골반이하)를 모두 동일부위라 한다
- 다. 눈 또는 귀의 장애에 대하여는 두눈 또는 두귀를 각각 동일부위라 한다.
- 라. 척추에 대하여는 목뼈이하를 모두 동일부위라 한다
- 마. 장해등급분류표중 제1급의 5, 6, 7, 8, 9 제2급의 3, 4, 5 제3급의 8 또는 제4급의 12의 장애에 해당하는 경우는 두팔 두다리, 한팔과 한다리, 10손가락 또는 발가락을 각각 동일부위라 한다

(별 표 4)

교 통 재 해 분 류 표

1. 이 보험에서 교통재해라 함은 다음에 정하는 사고를 말합니다.

- 가. 운행중의 교통기관 (이에 적재되어 있는 것을 포함합니다) 의 총돌, 접촉, 화재, 폭발, 도주등으로 인하여 그 운행중의 교통기관에 탑승하고 있지 아니한 피보험자가 입은 불의의 사고
- 나. 운행중인 교통기관에 탑승하고 있는 동안 또는 승객으로서 개찰구를 갖는 교통기관의 승강장구내 (개찰구의 안쪽을 말합니다)에 있는 동안 피보험자가 입은 불의의 사고
- 다. 도로 통행중 건조물, 공작물 등의 도피 또는 건조물, 공작물 등으로 부터의 낙화물로 인하여 피보험자가 입은 불의의 사고

2. 제1호에서 교통기관이라 함은 본래 사람이나 물건을 운반하기 위한 것으로 다음에 정한 것을 말합니다.

- 가. 기차, 전동차, 기동차, 모노레일, 케이블카 (공중케이블카를 포함합니다), 에레베이터 및 에스카레이터 등
- 나. 승용차, 버스, 휴대자동차, 오토바이, 스쿠터, 자전거, 화차, 경운기 및 우미차 등
- 다. 항공기, 선박 (유트, 모타보트, 보트를 포함합니다) 등

3. 제2호의 교통기관과 유사한 기관으로 인한 불의의 사고일지라도 도로상에서 사람 또는 물건의 운반에 사용되고 있는 동안이나 도로상을 주행중에 발생한 사고는 교통사고로 봅니다

4. 제1호 “가” 또는 “나”에 해당하는 사고일지라도 공장, 토목작업장, 채석장, 탄광 또는 광산의 구내에서 사용되는 교통기관에 직무상 관계하는 피보험자의 그 교통기관으로 인한 직무상의 사고는 교통사고로 보지 아니합니다.

5. 이 표에서 도로라 함은 일반의 교통에 사용할 목적으로 공중에게 개방되어 있는 모든 도로 (자동차 전용도로 및 통로를 포함합니다)로서 터널, 교량, 도선시설 등 도로와 일체가 되어 그 효용을 보완하는 시설 또는 공작물을 포함합니다.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
(적립형)

우대플러스저축보험 (적립형)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

1. 예정위험률에 관한 사항

가. 예정사망률 (qx)

재정경제원 보험 41263-353 ('96.12.24) 및 보험개발원 생손 제685호 ('96.12.26)에 의한
배당부 생존·사망률 (남자, 여자)을 사용함 (단, 예정재해 제1급의 장해율 0.000053을 포함함)

나. 예정재해사망률 ($q'x, q''x$)

재정경제원 보험 41263-353 ('96.12.24) 및 보험개발원 생손 제685호 ('96.12.26)에 의한
배당예정재해사망률을 사용함 (단, 예정재해 제1급의 장해율 0.000053을 포함함)

구 분	일반재해 (qx)		고통 재해 ($q''x$)	
	남 자	여 자	남 자	여 자
0 ~ 14세	0.000128	0.000076	0.000155	0.000109
15 ~ 19세	0.000261	0.000070	0.000153	0.000053
20 ~ 29세	0.000460	0.000140	0.000689	0.000118
30 ~ 39세	0.000375	0.000147	0.000583	0.000154
40 ~ 49세	0.000466	0.000145	0.000707	0.000228
50 ~ 59세	0.000701	0.000172	0.000884	0.000342
60 ~	0.000980	0.000355	0.001141	0.000575

다. 예정재해장해율 (qj)

재정경제원 보험 41263-353 ('96.12.24) 및 보험개발원 생손 제685호 ('96.12.26)에 의한
배당예정재해장해율을 사용함

제 2급 장해율 (q2)	0.000006
제 3급 장해율 (q3)	0.000182
제 4급 장해율 (q4)	0.000094
제 5급 장해율 (q5)	0.000070
제 6급 장해율 (q6)	0.000262

라. 예정교통사고 입원율(qd)

한보체 제87-42호 ('87.10.8)에 의한 예정교통사고 입원율을 사용함
· 0.003817 (4일이상)

2. 예정이율에 관한 사항

보장계약 : 연 7.5% 복리

3. 예정사업비율에 관한 사항

구 분		예정사업비율
신계약비 (α)	3년납	초회 영업보험료의 150%
	5년납	초회 영업보험료의 230%
	7년납	초회 영업보험료의 250%
	10년납	초회 영업보험료의 250%
유지비 (β)		견당 매월 MAX { (5,000원 - 보장계약준보험료), 0 }
수금비 (γ)		매월 MAX { 영업보험료의 15% - 보장계약준보험료중 5,000원 초과분, 0 }

4. 해약환급금의 계산에 관한 사항

$$tWx_n = tVx_n - \frac{12 \times m - t}{12 \times m} \times \alpha$$

단, ① $m \geq 5$ 일 때 $m = 5$

$$t > 12 \times m \text{ 이면 } \frac{12 \times m - t}{12 \times m} \times \alpha = 0 \text{ 으로 함}$$

- ② m 납입기간 (년수)
 t 납입경과기간 (월수)

$$\textcircled{3} \quad \frac{12 \times m - t}{12 \times m} \times \alpha \quad \text{해약환급금액} \quad (\alpha \text{ 예정신계약비 })$$

- ④ 5년미만 경과시 해약하는 경우에는 책임준비금 (tVx_n) 계산시 아래와

같은 보험료 납입경과 기간별 충도해지이율 (i^*)을 적용하여 계산함

보험료 납입경과기간 1년미만	: 이 보험의 약관대출이율	- 6.0%
보험료 납입경과기간 2년미만	: 이 보험의 약관대출이율	- 5.5%
보험료 납입경과기간 3년미만	: 이 보험의 약관대출이율	- 4.5%
보험료 납입경과기간 4년미만	: 이 보험의 약관대출이율	- 3.5%
보험료 납입경과기간 5년미만	: 이 보험의 약관대출이율	- 2.5%

5. 보험료의 계산에 관한 사항

가. 순보험료 (월납)

(1) 보장계약

$$P_x^{(1)} = \frac{A \cdot \bar{C}_x + B \cdot \frac{\bar{C}_x^1}{12} + C \cdot (\bar{C}_x^2 + \bar{C}_x^3) + D \cdot \frac{\bar{C}_x^4}{12 \cdot D_x \cdot a_x}}{1}$$

(2) 죽립계약

가) 3년납, 5년납

$$P_x^{(2)} = \text{영업보험료} \cdot 0.955 - \text{MAX} \{ P_x^{(1)}, (5,000 + \text{영업보험료} \cdot 0.015) \}$$

나) 7년납, 10년납

- 계약후 5년이내

$$P_x^{(2)} = \text{영업보험료} \cdot 0.951 - \text{MAX} \{ P_x^{(1)}, (5,000 + \text{영업보험료} \cdot 0.015) \}$$

- 계약후 5년초과

$$P_x^{(2)} = \text{영업보험료} - \text{MAX} \{ P_x^{(1)}, (5,000 + \text{영업보험료} \cdot 0.015) \}$$

(주)

A	B	C	D
2,000,000	10,000,000	5,000,000	200,000

\bar{C}_x	재해이외의 원인으로 사망 또는 제 1급의 장해가 된 피보험자의 현가
$\frac{1}{\bar{C}_x}$	교통재해로 사망 또는 제 1급의 장해가 된 피보험자의 현가
$\frac{2}{\bar{C}_x}$	교통재해이외의 재해로 사망 또는 제 1급의 장해가 된 피보험자의 현가
$\frac{3}{\bar{C}_x}$	재해로 인한 제 2급 내지 제 6급의 장해율 \times 자급율의 현가
$\frac{3}{\bar{C}_x} = I_x \times v^{x+1/2} \times (0.7 \times q_2 + 0.5 \times q_3 + 0.3 \times q_4 + 0.15 \times q_5 + 0.1 \times q_6)$	
$\frac{4}{\bar{C}_x}$	교통재해로 인하여 입원한 피보험자의 현가

나 영업보험료

월 보험료 5만원 이상 100만원 이하 정액으로 함

6. 책임준비금의 계산에 관한 사항

【 보험료 납입중】

$$tVx_n = \sum_{k'=1}^t [Tk' \times (1+i')^{t-k'} - Ak' \times (1+i')^{t-k'}]$$

【 보험료 납입후】

$$tVx_n = \sum_{k'=1}^t [Tk' \times (1+i')^{t-k'} - Ak' \times (1+i')^{t-k'}] - \sum_{k'=t''+1}^t Bk' \times (1+i')^{t-k'}$$

단, Tk' : k' 보험년도중 납입된 보험료의 k' 보험년도말 원리합계

$P_x^{(2)}$	$\cdot (1 + \frac{m1}{365} \times i')$
$P_x^{(2)}$	직립계약 순보험료
$m1$	보험료 납입기간중 보험료 납입시점부터 해당 보험년도말까지의 일수

t' . 보험료 납입경과 기간별 증도해지이율 (i')을 적용
 단, 사망 및 5년이상 경과할 경우의 책임준비금 계산시는
이 보험의 약관대출이율 = 1.5%를 적용

Ak 매년 지급되는 생활여유자금 = 영업보험료 × 6

t'' . 보험료 납입기간

t . 가입후 경과년수

Bk' . k' 보험년도중 보장계약 순보유료 및 유지비의 k' 보험년도말 원리합체

$$\left[\begin{array}{l} (1) \\ = \sum (P_{x+k'} + \beta) \times (1 + \frac{m2}{365} \times t') \end{array} \right] \\
 m2 . \text{보험료 납입완료후 매월 보험계약해당일부터} \\
 \text{해당 보험년도말까지의 일수}$$

7. 계약자 배당준비금의 계산에 관한 사항

가. 회사는 계약자에게 배당하기 위하여 계약자배당준비금을 적립하여야 하며, 계약자배당준비금은 매 사업년도말에 재정경제원장관의 승인을 얻은 금액으로 한다

나. 가항에 의하여 적립된 계약자배당준비금은 “계약자배당준비금적립 및 배당에 관한 지침”에 따라 계약자에게 배당한다.

8. 납입보험료, 보험기간, 납입기간을 변경할 때의 계산에 관한 사항

가. 납입보험료의 감액

납입보험료를 감액하고자 할 때에는 감액된 부분은 해약된 것으로 보고 다음 공식에 의하여 산출된 금액을 계약자에게 지급함.

$$\begin{aligned}
 & \text{【지급액} = tWx \cdot n - tW'x \cdot n \text{】} \\
 & \left[\begin{array}{l} tWx : n : \text{당초 보험계약에 대한 해약환급금 해당액} \\ tW'x : n : \text{감액된 보험계약에 대한 해약환급금 해당액} \end{array} \right]
 \end{aligned}$$

나 보험기간 및 납입기간의 변경

보험기간 및 납입기간의 변경은 취급하지 아니함.

9. 기타 보험수리에 관한 사항

가. 선납보험료에 관한 사항

보험료를 선납할 때에는 당월분을 포함하여 12개월분 이하의 보험료를 선납할 때에 한하며, 이 때 선납보험료는 월납보험료의 배수로 납입하여야 한다.

선납보험료는 보험료납입일로부터 청약준비금산출시 적용된 이율로 부리처럼하여, 당해보험료 납입해당일에 대체한다

나. 연체이자율

연체보험료에 대한 연체이자율은 연체기간의 「이 보험의 약관대출이율 + 15%」로 한다

우대플러스저축보험 순보험료표

적립형 연령			연령	예정이율 7.5%	
	남자	여자		남자	여자
15	429	237	43	1,331	593
16	437	240	44	1,399	619
17	444	242	45	1,477	649
18	455	240	46	1,560	683
19	475	239	47	1,661	715
20	915	305	48	1,766	746
21	944	311	49	1,884	776
22	977	320	50	2,194	902
23	999	330	51	2,343	951
24	1,011	337	52	2,486	1,004
25	1,007	342	53	2,645	1,066
26	997	347	54	2,829	1,132
27	983	351	55	3,049	1,204
28	969	356	56	3,321	1,300
29	961	363	57	3,640	1,421
30	862	389	58	4,001	1,567
31	865	396	59	4,418	1,726
32	871	403	60	5,129	2,090
33	884	411	61	5,633	2,263
34	898	422	62	6,163	2,441
35	921	432	63	6,744	2,635
36	946	444	64	7,335	2,856
37	964	455	65	7,952	3,096
38	996	463	66	8,609	3,360
39	1,032	475	67	9,264	3,650
40	1,179	537	68	9,997	3,977
41	1,228	551	69	10,777	4,339
42	1,282	570	70	11,645	4,740

우대플러스저축보험 약관
(거치형)

우대플러스저축보험 약관(가치형)

제1조 【보험계약의 성립】

- (1) 보험계약은 보험계약자의 청약(請約)과 보험회사의 승낙(承諾)으로 이루어 집니다 (이하 보험계약은 “계약”, 보험계약자는 “계약자”, 보험회사는 “회사” 라 합니다)
- (2) 회사는 피보험자가 계약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승낙을 거절할 수 있으며, 계약자는 청약을 한 날 또는 제1회보험료를 납입한 날로부터 15일이내에 그 청약을 철회(撤回)할 수 있습니다.
- (3) 회사는 계약의 청약을 받고, 제1회보험료를 받은 경우에 진단을 받지 아니하는 계약 (이하 “무진단계약” 이라 합니다)은 정약일, 건강진단을 받는 계약 (이하 “진단계약” 이라 합니다)은 진단일로부터 30일이내에 승낙 또는 거절하여야 하며, 승낙한 때에는 보험증권을 교부합니다 그러나 30일이내에 승낙 또는 거절의 통지가 없으면 승낙된 것으로 봅니다.

제2조 【계약의 체결 및 보험료】

- (1) 계약자는 다음에 정하는 보장계약과 적립계약을 동시에 체결하여야 합니다.
(이하 “보장계약”과 “적립계약”을 합하여 “계약” 이라 합니다)
1. 보장계약
보험기간중 피보험자가 사망 또는 별표3에서 정하는 “장해등급분류표” (이하 “장해분류표” 라 합니다)중 제1급의 장해(이하 “제1급의 장해” 라 합니다) 또는 별표2(재해분류표)에서 정하는 재해(이하 “재해” 라 합니다)로 인한 제2급 내지 제6급의 장해로 보험금을 지급받기 위한 계약
2. 적립계약
보험기간이 끝날 때까지 매년 보험계약해당일에 피보험자가 살아있을 경우 생활여유자금 및 만기보험금을 지급받기 위한 계약

(2) 계약자는 제1항에서 정하는 보장계약보험료와 적립계약보험료를 합하여 납입하여야 합니다 (이하 “보장계약보험료”와 “적립계약보험료”를 합하여 “보험료”라 합니다)

제3조 【계약의 효력】

(1) 회사는 계약의 청약을 승낙하고 제1회보험료를 받은 때로부터 이 약관이 정한 바에 따라 책임을 집니다. 그러나 회사가 청약시에 제1회보험료를 받고 청약을 승낙한 경우에는 제1회보험료를 받은 때로부터 이 약관이 정한 바에 따라 책임을 집니다 (이하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날을 “책임개시일”이라 하며 책임개시일을 “보험계약일”로 봅니다)

(2) 회사가 청약시에 제1회 보험료를 받고 청약을 승낙하기 전에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도 책임개시일로부터 이 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책임을 집니다.

(3) 회사는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중 한 가지의 경우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1. 제11조 (가입자의 고지의무)의 규정을 준용하여 회사가 책임을 지지 아니할 수 있는 경우

2. 제11조 (가입자의 고지의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회사에 알린 내용 또는 건강진단 내용이 보험금 지급사유의 발생에 영향을 미쳤음을 회사가 증명하는 경우

(4) 계약청약서에 피보험자의 직업 또는 직종별로 보험가입금액의 한도액이 명시되어 있음에도 그 한도액을 초과하여 청약을 하고 청약을 승낙하기 전에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초과청약액에 대하여는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5) 보험기간중 피보험자가 사망하거나 제1급의 장해상태가 된 경우에는 이 계약은 그 때부터 효력을 가지지 아니합니다.

제3조의 2 【회사가 제작한 보험안내장등의 효력】

보험을 모집한 자 (이하 “모집인등”이라 합니다)가 모집과정에서 사용한

회사(영업국, 영업소 및 대리점 포함) 제각각의 보험안내장(서류, 사진, 도화 등 모든 안내자료 포함) 내용이 이 약관의 내용과 다른 경우에는 계약자에게 유리한 내용으로 계약이 성립된 것으로 봅니다

제4조 【계약불성립시의 보험료의 반환】

- (1) 회사가 제1회보험료를 받고 승낙을 거절한 경우에는 거절통지와 함께 받은 금액을 돌려 드리고, 계약자가 청약을 철회한 때에는 3일이내에 그 보험료를 돌려 드립니다
(2) 계약자가 청약을 철회한 경우에는 제 1항의 반환기일의 다음날로부터 반환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회사의 약관대비율이 윤로, 회사가 청약에 대한 승낙을 거절한 경우에는 보험료를 받은 기간에 대하여 8.5%를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드립니다

제4조의 2 【약관교부 및 중요한 내용의 설명의무】

- (1) 회사는 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자에게 약관을 드리고 그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여 드립니다.
(2) 계약자가 청약시까지 약관의 전달 및 그 중요한 내용을 설명받지 못한 것을 이유로 청약일로부터 3개월이내에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드려며 보험료를 받은 기간에 대하여 회사의 약관대출 이용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드립니다

제5조 【보험수익자의 지정】

이 계약에서 계약자가 보험수익자 (이하 “수익자” 라 합니다)를 지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수익자를 제7조 (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경우는 계약자로 하고 동조 동항 제3호 내지 제6호의 경우는 피보험자로 하며, 피보험자의 사망시는 피보험자의 상속인으로 합니다.

제5조의 2 【대표자의 지정】

- (1) 계약자 또는 수익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각 대표자 1인을 지정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그 대표자는 각각 다른 계약자 또는 수익자를 대리하는 것으로 합니다.
- (2) 제 1항의 대표자가 지정되지 아니하였거나 지정된 계약자 또는 수익자의 소재가 확실하지 아니한 경우에 이 계약에 관하여 회사가 계약자 또는 수익자 1인에 대하여 한 행위는 각각 다른 계약자 또는 수익자에 대하여도 효력이 미칩니다.
- (3) 계약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그 책임을 연대(連帶)로 합니다

제6조 【계약의 무효】

- 다음 중 한가지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계약을 무효로 하며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드립니다.
- 1 타인의 사망을 보험금 지급사유로 하는 계약에서 계약체결시까지 피보험자의 서면에 의한 동의를 얻지 아니한 경우
 2. 만15세미만자, 심신상실자(心神喪失者) 또는 심신박약자(心神薄弱者)를 피보험자로 한 경우

제7조 【보험금의 지급사유】

- (1) 회사는 피보험자에게 다음 사항 중 어느 한가지의 경우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수익자에게 약정한 보험금(별표1 “보험금 지급기준 표” 참조)를 지급합니다
1. 보험기간이 끝날 때까지 피보험자가 살아있을 경우 : 만기보험금 지급
 2. 보험계약 가입 1년 후부터 매년 보험계약해당일에 피보험자가 살아있을 경우 (단, 만기 시 제외) : 생활여유자금 지급
 3.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재해이외의 원인으로 인하여 사망하거나 제1급의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

- 일반사망보험금과 그때까지 적립한 책임준비금 지급
- 4 보험기간중 피보험자가 별표4(교통재해분류표)에서 정하는 교통재해
(이하 “교통재해” 라 합니다) 이외의 재해로 인하여 사망하거나 제1급
의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
일반재해사망보험금과 그 때까지 적립한 책임준비금 지급
- 5 보험기간중 피보험자가 교통재해로 인하여 사망하거나 제1급의 장해
상태가 되었을 때
· 교통재해사망보험금과 그 때까지 적립한 책임준비금 지급
- 6.보험기간중 피보험자가 재해로 인하여 제2급 내지 제6급의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 재해장해급여금 지급
- (2)제1항의 경우 피보험자가 생사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실종선고
(失踪宣告)가 있거나 재해로 인하여 사망한 것으로 정부기관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망한 것으로 봅니다.
- (3)제1항 제4호 내지 제6호의 경우 장해상태의 등급이 재해일로부터 180
일이내에 확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180일이 되는 날 현재의 장해진단
을 기준으로 장해상태의 등급을 결정합니다.
- (4)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계약이 유효한 기간중에 피보험자에게 재해
가 발생하고 계약의 효력이 없어진 경우에도 재해일로부터 180일이내에
그 재해로 인하여 제1항 제4호 내지 제6호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회사
가 책임을 집니다.
- (5)제1항 제6호의 경우 피보험자가 보험기간중 동일한 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두 종목 이상의 장해를 입었을 경우 그 각각에 해당하는 재해
장해급여금을 수의자에게 드립니다.
그러나 그 장해상태가 신체의 동일부위에서 발생한 경우에는 최상위의
등급에 해당하는 재해장해급여금만을 드립니다
- (6)제5항에 규정한 재해장해급여금의 지급시 ситу가 다른 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하여 2회이상 발생하였을 때에는 그 때마다 이에 해당하는 재해
장해급여금을 수의자에게 드립니다.
- 그러나 그 장해가 이미 재해장해급여금을 지급 받은 동일부위에 가중된
장해일 때에는 새로 발생된 장해에 해당하는 재해장해급여금에서 이미
지급한 재해장해급여금을 뺀 차액을 드립니다
- (7)제5항에 있어서 그 재해전에 이미 다음중 한 가지의 경우에 해당되는
장해가 있었던 피보험자에게 그 신체의 동일 부위에 또 다시 제6항에 규
정하는 장해상태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다음중 한가지의 경우에 해당되는

장해에 대해서는 이미 재해장해급여금이 지급된 것으로 보고 제6항 후단의 규정을 적용합니다

- 1 이 보험의 책임개시전의 원인에 의하거나 또는 그 이전에 발생한 장해로 재해장해급여금의 지급사유가 되지 않았던 장해
2. 전호 이외에 이 보험의 규정에 의하여 재해장해급여금의 지급사유가 되지 않았던 장해 또는 재해장해급여금이 지급되지 않았던 장해

제8조 【배당금의 지급】

회사는 재정경제원장관이 인가하는 방법에 따라 계약자에게 배당금을 드립니다.

제9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보험사고】

(1)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 가지의 경우에 의하여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드리지 아니함과 동시에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1.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그러나, 피보험자가 정신질환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와 계약의 책임 개시일 (부활계약의 경우는 부활청약일)로부터 2년이 경과된 후에 자살하거나 자신을 해침으로써 장해분류표중 제1급의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2. 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그러나, 그 수익자가 보험금의 일부 수익자인 경우에는 그 잔액을 다른 수익자에게 드립니다.
 3. 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 (2) 제1항 각호의 사유로 인하여 회사가 이 계약을 해지하거나 계약이 더 이상 효력이 없어지는 때에는 다음과 같이 합니다
1. 제1항 제1호의 경우에는 계약자에게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 드립니다.
 2. 제1항 제2호의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 보험금에 해당하는 해약환급

금을 드립니다

3 제1항 제3호의 경우에는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 드리지 아니합니다.

제10조 【전쟁, 기타 변란시의 보험금】

회사는 피보험자가 전쟁, 기타 변란으로 인하여 사망하거나 장해분류^표중 제1급 내지 제6급의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 그 수가 보험료 산출기초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재정경제원장판의 인가를 얻어 보험금을 감액하여 드립니다

제11조 【가입자의 고지의무】

(1)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청약시 (건강진단을 받는 경우에는 건강진단 시 포함) 청약서에서 질문한 사항에 대하여 알고 있는 사실을 반드시 사실대로 알려야 (이하 "고지의무" 라 합니다) 합니다.

그러나 의료법 제 3조의 종합병원 및 병원에서 직장 또는 개인이 실시한 건강진단서 사본등 건강상태를 판단할 수 있는 자료로 건강진단을 대신 할 수 있습니다.

(2)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보험금 지급 사유 발생에 영향을 미치는 제1항의 고지의무를 위반한 때에는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여부에 관계없이 회사는 계약을 해지(解止)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음중 한 가지의 경우에 해당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1. 회사가 계약당시에 그 사실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알지 못하였을 때
2. 회사가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1개월이상 지났거나 또는 책임개시일로부터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지 아니하고 2년 (건강진단을 받은 피보험자의 경우에는 1년) 이상 지났을때
3. 회사가 이 계약의 청약시 피보험자의 건강상태를 판단할 수 있는 기초자료 (건강진단서 사본등)에 의하여 승낙통지를 한 때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회사에 제출한 기초자료의 내용 중 중요사항을 고의

로 사실과 다르게 작성한 때에는 제외)

- 4 피보험자의 직업 또는 직종에 관하여 사실대로 알리지 아니한 경우
(청약서에 명시되어 있는 승낙거절 직업 또는 직종은 제외)
5. 모집인등이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고지의무사항을 임의로 기재한 경우 (청약서에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자필로 서명한 경우는 제외)
- (3)제2항에 의하여 계약을 해지하였을 때에는 해약환급금 또는 이미 납입한 보험료중 많은 금액을 지급합니다.
- (4)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청약서에 피보험자의 직업 또는 직종에 관한 고지의무를 위반함으로써 청약서에 명시되어 있는 보험가입한도액을 초과한 경우, 회사는 보험금지급사유의 발생여부에 관계없이 보험가입한도액으로 감액하며, 그 초과가입액에 대한 보험료는 돌려드립니다.
- (5)제1항의 고지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보험금지급사유 발생에 영향을 미쳤음을 회사가 증명하지 못한 경우에는 해당 보험금을 드립니다

제12조 【계약취소권의 행사 제한】

회사는 책임개시일로부터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지 아니하고 2년 (건강진단을 받은 피보험자의 경우에는 1년) 이상 지났을 때에는 민법 제110조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에 의한 취소권을 행사하지 아니합니다 그러나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대리진단, 약물복용을 수단으로 진단 절차를 통과하거나 진단서 위·변조 또는 정약일 이전에 암 또는 에이즈의 진단확정을 받은 후 이를 숨기고 가입하는 등의 뚜렷한 사기의사에 의하여 계약이 성립되었음을 회사가 증명하는 경우에는 책임개시일로부터 5년이내 (사기사실을 안 날로부터는 1개월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제13조 【보험금 지급사유의 발생통지】

수익자는 제 7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 정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제14조 【주소변경 통지】

- (1) 계약자는 주소 또는 연락처가 변경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이를 회사에 알리야 합니다.
(2) 제1항의 정한대로 계약자가 알리지 않은 경우 회사가 알고 있는 최종의 주소로 알린 사항은 일반적으로 도달에 필요한 시일이 지난 때에는 계약자에게 도달한 것으로 봅니다.

제15조 【보험금등 청구시 구비서류】

- (1) 수익자 또는 계약자는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고 보험금 또는 해약환급금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1. 청구서 (회사양식)
 2. 사고증명서 (사망진단서, 장해진단서 등)
 3. 보험증권
 4. 주민등록증 제시 (본인이 아닌 경우는 본인의 인감증명서)
 5. 기타, 수익자가 보험금 등의 수령에 필요하여 제출하는 서류
- (2) 병원 또는 의원에서 제1항 제2호의 사고증명서를 발급받을 경우, 그 병원 또는 의원은 의료법 제3조 제2항에서 정한 국내의 병원이나 의원 또는 이와 동등하다고 회사가 인정하는 국외의 의료기관을 말합니다

제16조 【보험금등의 지급】

- (1) 회사는 제15조(보험금 등 청구시 구비서류)에 정한 서류를 접수한 때에는 접수증을 교부하고, 그 서류를 접수한 날로부터 3일이내에 보험금 또는 해약환급금을 드립니다
다만, 보험금의 경우 지급사유의 조사나 확인이 필요한 때에는 접수후 10일이내에 드립니다.
(2)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는 제 11조(가입자의 고지의무)와 관련하여 의료기관등에 대한 회사의 조사에 동의하여야 합니다
(3) 회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급기일내에 보험금 또는 해약환급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그 지급기일의 다음날부터 지급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회사의 약관대출 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드립니다.

(4)이 약관에 의한 해약환급금은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합니다

이때, 적용되는 해지이율은 보험계약일로부터 보험료 납입 경과기간이 1년미만은 「6.5%」, 2년미만은 「이 보험의 약관대출이율-3.5%」, 3년미만은 「이 보험의 약관대출이율-2.5%」, 5년미만은 「이 보험의 약관대출이율-2.0%」, 5년이상은 「이 보험의 약관대출이율-1.5%」의 이율을 적용하며, 이 보험의 약관대출이율이 변경될 경우에는 변경된 날로부터 변경된 이 보험의 약관대출이율을 적용합니다.

(5)회사는 생활여유자금 및 만기보험금의 지급시기가 도래할 때에는 도래 일 7일이전에 그 사유와 회사가 지급하여야 할 금액을 알려 드립니다.

(6)생활여유자금은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날로부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급기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해약환급금에 적용되는 해지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드립니다

(7)만기보험금 및 해약환급금은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날로부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급기일까지의 기간의 대하여 8.5%를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드립니다

제17조 【보험금 수령방법의 선택】

(1)계약자(보험금 지급사유 발생후에는 수익자)는 회사의 사업방법서에 정한 바에 따라 제7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항 제3호 내지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사망보험금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제16조(보증금등의 지급) 규정에 의한 일시금으로 지급받는 이외에 다른 지급방법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2)회사는 제 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자(보험금 지급사유 발생후에는 수익자)의 요청에 의하여 그 지급방법을 변경한 때에는 그 미지급금액에 대하여 8.5%를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드립니다

제 18조 【계약내용의 변경】

- (1) 계약자는 회사의 승낙을 얻어 다음의 사항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승낙을 서면으로 알리거나 보험증권의 뒷면에 기재하여 드립니다
1. 납입보험료
 2. 계약자 또는 수익자
 3. 기타 계약의 내용
- (2) 회사는 계약자가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납입보험료를 감액하고
자 할 때에는 그 감액된 부분은 해약된 것으로 보며, 이로 인하여 회사가
지급하여야 할 해약환급금이 있을 때에는 제16조(보험금등의 지급) 제4항
에 따라 이를 계약자에게 드립니다
- (3) 계약자가 제 1항 제 2호중 수익자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보험금의
지급사유가 발생하기전에 피보험자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 (4)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계약자의 변경은 계약자가 사망, 파산,
이민 또는 이혼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계약을 유지시킬 수 없는
경우에 가능합니다

제19조 【계약자의 임의해지】

계약자는 보험계약이 소멸하기 전에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회사는 해약환급금을 드립니다.

제20조 【약관대출】

- (1) 계약자는 이 계약의 해약환급금 범위내에서 회사가 정한 방법에 따라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2) 계약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약관대출금과 그 이자를 언제든지
상환할 수 있으며 상환하지 아니한 때에는 보험금, 해약환급금 등의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에 제지급금에서 상계하는 방법으로 회수합니다
- (3) 회사가 약관대출이자의 납입지연등을 이유로 약관대출 대상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지 10일전까지 계약자에게 그 내용을 서면

으로 통지하여야 합니다

제21조 【계약내용의 교환】

회사는 계약자의 동의를 받아 다음의 사항을 다른 회사에 제공할 수 있습니다.

1. 계약자·피보험자 및 수익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2. 계약일, 보험종목
3. 보험가입금액, 보험금과 각종 급부금의 금액 및 지급사유

제22조 【회사의 손해배상 책임】

회사는 계약과 관련하여 임·직원, 모집인 및 대리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하여 발생된 손해에 대하여 관계법규 및 사업방법서에서 정한 바에 따라 손해배상의 책임을 집니다.

제23조 【분쟁의 조정】

계약에 관하여 분쟁이 있는 경우 분쟁당사자 또는 기타 이해관계인과 회사는 보험감독원장에게 그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제24조 【관할법원】

이 계약에 관한 소송은 계약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으로 합니다
다만, 회사와 계약자가 합의에 의하여 관할법원을 따로 정할 수 있습니다

제25조 【보험보증기금의 지급보장】

계약자 및 보험료 납부자가 법인이 아닌 계약에 대하여는 회사가 파산등
으로 인하여 보험금 등을 지급하지 못할 경우 보험보증기금이 1인당 5천
만원 한도내에서 그 지급을 보장합니다

제 26조 【준거법】

이 약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대한민국 법령을 따릅니다

(별 표 1)

보험금 지급기준표

급 어 명	지 급 사 유	지 급 액
만기보험금(약관 제7조 제1항 제1호)	보험기간이 끝날 때까지 피보험자가 살아있을 경우	책임준비금
생활여유자금(약관 제7조 제1항 제2호)	보험계약 가입 1년 후부터 매년 보험계약 해당일에 피보험자가 살아있을 경우 (단, 만기시 제외)	매년 일시납보험료의 10% (단, 만기시 제외)
일반사망 보험금(약관 제7조 제1항 제3호)	보험기간중 피보험자가 재해이외의 원인으로 인하여 사망하거나 제1급의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	일시납보험료의 10% (단, 60세이후는 일시납보험료의 5%) + 책임준비금
일반재해 사망보험금(약관 제7조 제1항 제4호)	보험기간중 피보험자가 교통재해이외의 재해로 인하여 사망하거나 제1급의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	일시납보험료의 20% (단, 60세이후는 일시납보험료의 10%) + 책임준비금
교통재해 사망보험금(약관 제7조 제1항 제5호)	보험기간중 피보험자가 교통재해로 인하여 사망하거나 제1급의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	일시납보험료의 30% (단, 60세이후는 일시납보험료의 15%) + 책임준비금
재 해 장해급여금(약관 제7조 제1항 제6호)	보험기간중 피보험자가 재해로 인하여 제 2급 내지 제 6급의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	제 2급 : 일시납보험료의 70% 제 3급 : 일시납보험료의 50% 제 4급 : 일시납보험료의 30% 제 5급 일시납보험료의 15% 제 6급 일시납보험료의 10% (단, 60세이후는 상기 금액의 50%지급)

(주) 「책임준비금」 이란 이 계약의 적립계약 순보험료를 「이 보험의 약관 대출이율-1.5%」로 납입일로부터 일자 계산에 의하여 부리한 금액에서 생활여유자금을 지급하고 남은 금액을 부리 적립한 금액

(별 표 2)

재 해 분 류 표

재해라 함은 우발적인 외래의 사고 (다만, 질병 또는 체질적 요인이 있는 자로서 경미한 외부요인에 의하여 발병하거나 또는 그 증상이 더욱 악화되었을 때에는 그 경미한 외부 요인은 우발적인 외래의 사고로 보지 아니함)로서 다음 분류표에 따른 사고를 말한다

* 이 분류는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통계청 고시 제 1993-3호, 1995.1.1 시행) 중 “질병이환 및 사망의 의인”에 의한 것임

분 류 항 목	분 류 번 호
1. 운수사고에서 다친 보행인	V01~V09
2. 운수사고에서 다친 자전거 탑승자	V10~V19
3. 운수사고에서 다친 모터사이클 탑승자	V20~V29
4. 운수사고에서 다친 삼륜자동차량의 탑승자	V30~V39
5. 운수사고에서 다친 승용차 탑승자	V40~V49
6. 운수사고에서 다친 꾹업 트럭 또는 벤 탑승자	V50~V59
7. 운수사고에서 다친 대형화물차 탑승자	V60~V69
8. 운수사고에서 다친 버스 탑승자	V70~V79
9. 기타 육상운수 사고 (철도사고 포함)	V80~V89
10. 수상 운수사고	V90~V94
11. 항공 및 우주 운수사고	V95~V97
12. 기타 및 삼세불명의 운수사고	V98~V99
13. 추락	W00~W19
14. 무생물성 기계적 힘에 노출	W20~W49
15. 생물성 기계적 힘에 노출	W50~W64
16. 불의의 익수	W65~W74
17. 기타 불의의 호흡 위협	W75~W84
18. 전류, 방사선 및 극순환 기온 및 압력에 노출	W85~W99
19. 연기, 불 및 화염에 노출	X00~X09
20. 열 및 가열된 물질과의 접촉	X10~X19

분류항목	분류번호
21. 유독성 동물 및 식물과의 접촉	X20~X29
22. 자연의 힘에 노출	X30~X39
23. 유독물질에 의한 불의의 중독 및 노출	X40~X49
24. 기타 및 상세불명의 요인에 불의의 노출	X58~X59
25. 가해	X85~Y09
26. 의도 미확인 사건	Y10~Y34
27. 법적개입 및 전쟁행위	Y35~Y36
28. 치료시 부작용을 일으키는 약물, 약제 및 생물학 물질	Y40~Y59
29. 외과적 및 내과적 치료중 환자의 재난	Y60~Y69
30. 진단 및 치료에 이용되는 의료장치에 의한 부작용	Y70~Y82
31. 처치 당시에는 재난의 언급이 없었으나 환자에게 이상반응이나 후에 합병증을 일으키게 한 외과적 및 내과적 처치	Y83~Y84
32. 전염병 예방법 제2조 제1항 제1종에 규정한 질병	

※ 제 의 사 항

- “약물 및 의약품에 의한 불의의 중독” 중 외용약 또는 약물 접촉에 의한 알레르기 피부염 (L23.3)
- “기타 고체 및 액체물질, 가스 및 증기에 의한 불의의 중독” 중 한국 표준질병사인분류상 A00~R99에 분류가 가능한 것
- “외과적 및 내과적 치료중 환자의 재난” 중 진료기관의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사고
- “자연 및 환경요인에 의한 불의의 사고” 중 급격한 액체손실로 인한 탈수
- “의수, 질식 및 이물에 의한 불의의 사고” 중 질병에 의한 호흡장해 및 삼킬장해
- “기타 불의의 사고” 중 과로 및 격렬한 운동으로 인한 사고
- “법적 개입” 중 처형 (Y35.5)

(별표3)

장해등급분류표

등급	신체장해
제1급	<p>1. 두눈의 시력을 완전 영구히 잃었을 때 2. 말 또는 씹어먹는 기능을 완전 영구히 잃었을 때 3. 중추신경계 또는 정신에 뚜렷한 장해를 남겨서 평생토록 항상 간호를 받아야 할 때 4. 흉복부, 장기에 뚜렷한 장해를 남겨서 평생토록 항상 간호를 받아야 할 때 5. 두팔의 손목이상을 잃었거나 완전 영구히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 6. 두다리의 발목이상을 잃었거나 완전 영구히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 7. 한팔의 손목이상을 잃고, 한다리의 발목이상을 잃었을 때 8. 한팔의 손목이상을 잃고, 한다리를 완전 영구히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 9. 한다리의 발목이상을 잃고, 한팔을 완전 영구히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p>
제2급	<p>1. 중추신경계 또는 정신에 뚜렷한 장해를 남겨서 평생토록 수시 간호를 받아야 할 때 2. 흉복부 장기에 뚜렷한 장해를 남겨서 평생토록 수시간호를 받아야 할 때 3. 한팔 및 한다리를 완전영구히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 4. 10손가락을 잃었거나 완전 영구히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 5. 한팔 또는 한다리중에서 제3급의 2부터 7까지중의 신체장애가 생기고 다른 한팔 또는 한다리중에서 제3급의 2부터 7까지중 또는 제4급의 5부터 11까지 중에서 신체장애가 발생되었을 때 6. 두귀의 청력을 완전 영구히 잃었을 때</p>

등급	신체장애
제3급	<p>1. 한눈의 시력을 영구히 잃었을 때 2. 한팔의 손목이상을 잃었을 때 3. 한팔 또는 한팔의 3대관절중 2관절을 완전 영구히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 4. 한다리의 발목이상을 잃었을 때 5. 한다리 또는 한다리의 3대관절중 2관절을 완전 영구히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 6. 한손의 5손가락을 잃었을 때 7. 한손의 첫째손가락 및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4손가락을 잃었을 때 8. 10발가락을 잃었을 때 9. 척추에 뚜렷한 기형 또는 심한 운동장애를 영구히 남겼을 때</p>
제4급	<p>1. 두눈의 시력에 각각 뚜렷한 장해를 영구히 남겼을 때 2. 말 또는 씹어먹는 기능에 뚜렷한 장해를 영구히 남겼을 때 3. 중추신경계 또는 정신에 뚜렷한 장해를 남겨서 평생 일상 생활 기본동작에 제한을 받게 되었을 때 4. 흉복부, 장기에 뚜렷한 장해를 남겨서 평생 일상생활 기본 동작에 제한을 받을 때 5. 한팔의 3대관절중 1관절을 완전 영구히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 6. 한다리의 3대관절중 1관절을 완전 영구히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 7. 한다리가 영구히 5cm이상 단축되었을 때 8. 한손의 첫째손가락 및 둘째손가락을 잃었을 때 9. 한손의 첫째손가락 또는 둘째손가락중 1손가락을 포함하여 3손가락 이상을 잃었을 때 10. 한손의 5손가락을 완전 영구히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p>

등급	신체장애
제4급	<p>11. 한손의 첫째손가락 및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3손가락 이상을 완전 영구히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p> <p>12. 10발가락을 완전 영구히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p> <p>13. 한발의 5발가락을 잃었을 때</p> <p>14. 한귀의 청력을 영구히 잃고 다른 귀의 청력에 뚜렷한 장해를 영구히 남겼을 때</p> <p>15. 척추에 뚜렷한 운동장해를 영구히 남겼을 때</p>
제5급	<p>1. 비장 또는 한쪽의 신장을 상실한 때</p> <p>2. 한팔의 3대관절중 2관절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를 영구히 남겼을 때</p> <p>3. 한다리의 3대관절중 2관절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를 영구히 남겼을 때</p> <p>4. 한손의 첫째손가락 또는 둘째손가락을 잃었을 때</p> <p>5. 한손의 첫째손가락 또는 둘째손가락중 1손가락을 포함하여 2손가락을 잃었을 때</p> <p>6. 한손의 첫째손가락 및 둘째손가락 이외의 3손가락을 잃었을 때</p> <p>7. 한손의 첫째손가락 및 둘째손가락을 완전 영구히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p> <p>8. 한손의 첫째손가락 또는 둘째손가락중 1손가락을 포함하여 3손가락 이상을 완전 영구히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p> <p>9. 한발의 5발가락을 완전 영구히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p> <p>10. 한발의 첫째발가락을 포함하여 2발가락 내지 4발가락을 잃었을 때</p> <p>11. 두귀의 청력에 뚜렷한 장해를 영구히 남겼을 때</p> <p>12. 한귀의 청력을 완전 영구히 잃었을 때</p> <p>13. 코가 결손되고 그 기능에 뚜렷한 장해를 영구히 남겼을 때</p> <p>14. 척추에 운동장해를 영구히 남겼을 때</p>

등급	신체장애
제6급	<p>1. 한눈의 시력에 뚜렷한 장해를 영구히 남겼을 때</p> <p>2. 한팔의 3대관절중 1관절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를 영구히 남겼을 때</p> <p>3. 한다리의 3대관절중 1관절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를 영구히 남겼을 때</p> <p>4. 한다리가 영구히 3cm이상 단축되었을 때</p> <p>5. 한손의 첫째손가락 또는 둘째손가락을 완전 영구히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을때</p> <p>6. 한손의 첫째손가락 또는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2손가락을 완전 영구히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p> <p>7. 한손의 첫째손가락 및 둘째손가락 이외의 2손가락 이상을 완전 영구히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p> <p>8. 한손의 첫째손가락 또는 둘째손가락 이외의 1손가락 또는 2손가락을 잃었을 때</p> <p>9. 한발의 첫째발가락 또는 다른 4발가락을 잃었을 때</p> <p>10. 한발의 첫째발가락을 포함하여 3발가락이상을 완전 영구히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p>

(장해 등급 분류 해설)

1. "항상간호"

항상 타인의 간호 없이는 생명의 유지가 불가능한 경우 또는 고도의 치매 등으로 인하여 항상 타인의 간호가 필요한 경우를 말한다

2. "수시간호"

"수시간호"란 다음의 경우를 말한다

- 1) 생명의 유지를 위하여 수시로 타인의 간호가 필요한 경우
- 2) 정신장해로 인하여 자택밖의 행동이 곤란하여 수시로 타인의 보호가 필요한 경우
- 3) 심장, 신장 또는 간장의 장기이식을 한 경우 또는 장기이식을 하지 않고서는 생명 유지가 불가능하여 혈액투석등 의료처치를 평생

토록 받아야 할 때

3. "일상생활 기본동작의 제한"

음식물 섭취, 배변·배뇨, 거동·보행 또는 목욕등을 하는데 있어 평생 심한 불편을 당하는 경우 또는 정신장해로 인하여 생활적응능력이 떨어져 평생 정상적인 생활을 영위하는데 있어 심한 불편을 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4. "시력을 잃은 것"

시력이 0.02 이하 (시력의 측정은 국제식 시력검사표에 따라 한눈씩 교정시력에 대하여 측정함)로 되어 회복되지 않는 경우를 말한다.

5. "시력의 뚜렷한 장해"

시력이 0.06 이하 (시력의 측정은 국제식 시력검사표에 따라 한눈씩 교정시력에 대하여 측정함)로 되어 회복되지 않는 경우를 말한다

6. "말 또는 씹어먹는 기능을 잃은 것"

가."말의 기능을 완전영구히 잃은 것" 이란 다음의 경우를 말한다.

1) 말과 소리내는 기능장애로서 구순음(ㅁ, ㅂ, ㅍ), 치설음(ㄴ, ㄷ, ㄹ), 구개음(ㅈ, ㅊ), 후두음(ㅇ, ㅎ) 중 3종류이상의 발음이 불가능하고 그 회복이 되지 않는 경우

2) 뇌언어증후의 손상으로 인한 실어증으로서 음성언어에 의한 의사 소통이 불가능하고 그 회복이 되지 않는 경우

3) 성대 전부를 떼어냄으로서 발음이 불가능한 경우

나 "씹어먹는 기능을 완전영구히 잃은 것"

물이나 유동식 (미음등) 이외의 것은 섭취할 수 없는 상태로서 그 회복이 불가능한 경우를 말한다

7. "말 또는 씹어먹는 기능의 뚜렷한 장해"

가 "말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를 영구히 남긴 것"

말과 소리를 내는 기능의 장해로서 구순음, 치설음, 구개음, 후두 음 중 2종류 이상의 발음이 불가능하고 회복이 되지 않는 경우를 말한다.

나 "씹어먹는 기능에 뚜렷한 장해를 영구히 남긴 것"

죽 또는 이에 준하는 음식이외의 것은 섭취할 수 없는 상태로서 그 회복이 불가능한 경우를 말한다.

8. "청력을 완전영구히 잃은 것"

주파수 500, 1000, 2000, 4000 헬스의 경우에 청력상실의 정도를 각각 a,b,c,d 데시벨(청력검사 단위)로 했을 때 $1/6 (a + 2b + 2c + d)$ 의 값이 80데시벨(청력검사단위) 이상(귓전에 접하여도 큰소리를 듣지 못하는 것)으로서 회복이 불가능한 경우를 말한다.

9. "청력의 뚜렷한 장해"

위의 방법에 따른 값이 60데시벨 (청력검사단위) 이상 (40cm 이상의 거리에서 보통의 말소리를 해득하지 못하는 것)으로서 회복이 불가능한 경우를 말한다

10 "코의 결손과 뚜렷한 장해"

코뼈가 결손된 경우로서 양코로 숨쉬는 것이 곤란하거나 또는 후각기능을 잃고 그 회복이 불가능한 경우를 말한다

11 "팔다리를 완전 영구히 사용하지 못하는 것"

팔다리의 운동기능을 완전히 잃은 것을 말하며, 팔다리의 완전 운동마비 또는 팔다리 각각의 3 대관절(팔은 어깨관절 · 팔꿈치관절 · 손목 · 다리는 골반관절 · 무릎 · 발목)의 완전강직으로 그 회복이 불가능한 경우를 말한다

관절을 영구히 쓸 수 없는 경우 (인공관절 포함) 에도 이에 준한다.

12. "팔다리 관절의 뚜렷한 장해"

팔다리 각각의 3 대관절의 운동기능 영역이 생리적 운동영역의 1/2이하로 제한된 경우와 보행에 상당한 제한이 있는 등요관절의 경우를 말한다.

13. "척추의 뚜렷한 기형 또는 운동장애"

가. "척추의 뚜렷한 기형"

통상의 의복을 착용하여도 외부로부터 보아서 확실히 알 수 있는 정도 이상의 것을 말한다.

나. "척추의 심한 운동장해"
목뼈 또는 가슴등뼈 이하가 전후굽하기, 좌우굽하기 및 좌우회전운동 중 2종류 이상의 운동이 생리적 범위의 1/4 이하로 제한되는 경우를 말한다.

다. "척추의 뚜렷한 운동장해"
목뼈 또는 가슴등뼈 이하가 전후굽하기, 좌우굽하기 및 좌우회전운동 중 2종류 이상의 운동이 생리적 범위의 1/2 이하로 제한된 경우를 말한다.

라. "척추의 운동장해"
목뼈 또는 가슴등뼈 이하가 전후굽하기, 좌우굽하기 및 좌우회전운동 중 2종류 이상의 운동이 생리적 범위의 3/4 이하로 제한되는 경우를 말한다

14. "손가락의 장해"

가. "손가락을 잃은 것"
첫째손가락은 지질간관절(끝에서 첫째 마디), 기타의 손가락은 근위지질간관절(끝에서 둘째 마디) 이상을 잃은 것을 말한다

나. "손가락을 완전 영구히 사용하지 못하는 것"
손가락의 원위지질간관절(끝에서 첫째마디) [첫째 손가락은 말절골(끝에서 첫째마디)의 1/2] 이상을 잃은 경우 또는 손가락의 충수지질관절(끝에서 마지막마디) 또는 근위지질간관절(끝에서 둘째마디) [첫째 손가락은 지질간관절(끝에서 첫째마디)] 이 완전 강직되고, 그 회복이 불가능한 경우를 말한다

15. "발가락의 장해"

가. "발가락을 잃은 것"
발가락 전부(첫째발가락의 경우 말절골 이상)를 잃은 것을 말한다.

나. "발가락을 완전 영구히 사용하지 못하는 것"
첫째발가락은 말절골(끝에서 첫째마디)의 1/2 이상 그외 발가락은 원위지질간관절(끝에서 첫째마디) 이상을 잃은 경우거나 중족지질관절(끝에서 마지막마디) 또는 근위지질간관절(끝에서 둘째마디) [첫째 발가락은 지질간관절(끝에서 첫째마디)] 이 완전 강직되고, 그 회복이 불가능한 경우를 말한다.

16 "신체의 동일부위"

- 가. 한팔에 대하여는 어깨관절이하(순가락, 손목이하, 팔꿈치이하, 어깨이하)를 모두 동일부위라 한다.
- 나. 한다리에 대하여는 골반관절이하(발가락, 발목이하, 무릎이하, 골반이하)를 모두 동일부위라 한다.
- 다. 눈 또는 귀의 장해에 대하여는 두눈 또는 두귀를 각각 동일부위라 한다
- 라. 척추에 대하여는 목뼈이하를 모두 동일부위라 한다
- 마. 장해등급분류표중 제1급의 5, 6, 7, 8, 9 제2급의 3, 4, 5 제3급의 8 또는 제4급의 12의 장해에 해당하는 경우는 두팔, 두다리, 한팔과 한다리, 10손가락 또는 발가락을 각각 동일부위라 한다

(별 표 4)

교통재해분류표

1. 이 보험에서 교통재해라 함은 다음에 정하는 사고를 말합니다.

- 가 운행중의 교통기관 (이에 적재되어 있는 것을 포함합니다) 의 충돌, 접촉, 화재, 폭발, 도주등으로 인하여 그 운행중의 교통기관에 탑승하고 있지 아니한 피보험자가 입은 불의의 사고
- 나 운행중인 교통기관에 탑승하고 있는 동안 또는 승객으로서 개찰구를 갖는 교통기관의 승강장구내 (개찰구의 안쪽을 말합니다)에 있는 동안 피보험자가 입은 불의의 사고
- 다 도로 통행중 건조물, 공작물 등의 도피 또는 건조물, 공작물 등으로 부터의 낙화물로 인하여 피보험자가 입은 불의의 사고

2 제1호에서 교통기관이라 함은 본래 사람이나 물건을 운반하기 위한 것으로 다음에 정한 것을 말합니다.

- 가 기차, 전동차, 기동차, 모노레일, 케이블카 (공중케이블카를 포함합니다), 에레베이터 및 에스카레이터 등
- 나. 승용차, 버스, 화물자동차, 오토바이 스쿠터, 자전거, 화차, 경운기 및 무마차 등
- 다. 항공기, 선박 (롯트, 모타보트, 보트를 포함합니다) 등

3 제2호의 교통기관과 유사한 기관으로 인한 불의의 사고일지라도 도로상에서 사람 또는 물건의 운반에 사용되고 있는 동안이니 도로상을 주행중에 발생한 사고는 교통사고로 봅니다.

4. 제1호 “가” 또는 “나”에 해당하는 사고일지라도 공장, 토목작업장, 채석장, 탐광 또는 광산의 구내에서 사용되는 교통기관에 직무상 관계하는 피보험자의 그 교통기관으로 인한 직무상의 사고는 교통사고로 보지 아니합니다.

5. 이 표에서 도로라 함은 일반의 교통에 사용할 목적으로 공중에게 개방되어 있는 모든 도로 (자동차 전용도로 및 통로를 포함합니다)로서 터널, 교량, 도선시설 등 도로와 일체가 되어 그 효용을 보완하는 시설 또는 공작물을 포함합니다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
(거치형)

우대플러스저축보험 (기간형)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

1. 예정위험률에 관한 사항

가. 예정사망률 (qx)

재정경제원 보험 41263-353 ('96.12.24) 및 보험개발원 생손 제685호 ('96.12.26)에 의한
배당부 생존·사망률 (남자, 여자)을 사용함 (단, 예정개해 제1급의 장해율 0.000053을 포함함)

나. 예정재해사망률 ($q'x$, $q''x$)

재정경제원 보험 41263-353 ('96.12.24) 및 보험개발원 생손 제685호 ('96.12.26)에 의한
배당예정재해사망률을 사용함 (단, 예정재해 제1급의 장해율 0.000053을 포함함)

구 분	일반재해 ($q'x$)		교통재해 ($q''x$)	
	남 자	여 자	남 자	여 자
0 ~ 14세	0.000128	0.000076	0.000155	0.000109
15 ~ 19세	0.000261	0.000070	0.000153	0.000053
20 ~ 29세	0.000460	0.000140	0.000689	0.000118
30 ~ 39세	0.000375	0.000147	0.000583	0.000154
40 ~ 49세	0.000466	0.000145	0.000707	0.000228
50 ~ 59세	0.000701	0.000172	0.000884	0.000342
60 ~	0.000980	0.000355	0.001141	0.000575

다. 예정재해장해율 (qj)

재정경제원 보험 41263-353 ('96.12.24) 및 보험개발원 생손 제685호 ('96.12.26)에 의한
배당예정재해장해율을 사용함

제 2급 장해율 (q2)	0.000006
제 3급 장해율 (q3)	0.000182
제 4급 장해율 (q4)	0.000094
제 5급 장해율 (q5)	0.000070
제 6급 장해율 (q6)	0.000262

2. 예정이율에 관한 사항

보장계약 : 연 7.5% 복리

3. 예정사업비율에 관한 사항

구 分		내 정 사 업 비 율
신 개 약 비		일시납보험료의 4%
유 지 비	납입중	일시납보험료의 0.25% - 보장계약순보험료
	납입후	매년 (일시납보험료의 0.25% - 보장계약순보험료)
수 금 비		일시납보험료의 0.2%

4. 해약환급금의 계산에 관한 사항

$$tWx \cdot n = tVx \cdot n$$

단, 5년미만 경과시 해약하는 경우에는 책임준비금($tVx \cdot n$) 계산시 아래와 같은 보험료 납입경과 기간별 중도해지이율(i^*)을 적용하여 계산함

보험료 납입경과기간 1년미만	6.5%
보험료 납입경과기간 2년미만	이 보험의 약관대출이율 + 3.5%
보험료 납입경과기간 3년미만	이 보험의 약관대출이율 + 2.5%
보험료 납입경과기간 4년미만	이 보험의 약관대출이율 + 2.0%
보험료 납입경과기간 5년미만	이 보험의 약관대출이율 + 2.0%

5. 보험료의 계산에 관한 사항

가) 순보험료

(1) 보장계약

$$\frac{(r)}{Ax} = \frac{A' \cdot [K \cdot (\bar{C}_x^1 + 3 \times \bar{C}_x^2 + 2 \times \bar{C}_x^3) + \bar{C}_x^3]}{D_x}$$

단, $K=0.1$ (60세전), $K=0.05$ (60세이후)

(2) 적립계약

$$\frac{(s)}{A} = 0.9555 \cdot A'$$

\bar{C}_x	재해이외의 원인으로 사망 또는 제 1급의 장해가 된 피보험자의 현가
\bar{C}_x^1	교통재해로 사망 또는 제 1급의 장해가 된 피보험자의 현가
\bar{C}_x^2	교통재해이외의 재해로 사망 또는 제 1급의 장해가 된 피보험자의 현가
\bar{C}_x^3	재해로 인한 제 2급 내지 제 6급의 장해율 × 지급율의 현가
60세전	$\bar{C}_x^3 = 1x \times v^{x+1/2} \times (0.070 \times q2 + 0.050 \times q3 + 0.030 \times q4 + 0.0150 \times q5 + 0.010 \times q6)$
60세이후	$\bar{C}_x^3 = 1x \times v^{x+1/2} \times (0.035 \times q2 + 0.025 \times q3 + 0.015 \times q4 + 0.0075 \times q5 + 0.005 \times q6)$

나 영업보험료 (A') 일시납보험료 50만원 이상으로 함

6. 책임준비금의 계산에 관한 사항

$$tVx + n = A \times (1 + i')^t - At - Bt$$

단, A_t 대년 지급되는 생활여유자금의 t보험년도말까지의 원리합계

$$\begin{cases} At = 0 & (t=1) \\ At = \sum_{k=1}^{t-1} 0.1 \times A' \times (1 + i')^{t-k} & (t>1) \end{cases}$$

B_t 2차년도 이후 보상계약순보험료 및 원금유지비의 t보험년도말까지의 원리합계

$$\begin{cases} Bt = 0 & (t=1) \\ Bt = \sum_{k=1}^{t-1} 0.0025 \times A' \times (1 + i')^{t-k} & (t>1) \end{cases}$$

i' 보험료 납입경과 기간별 중도해지이율 (i')을 적용

단, 사망 및 5년이상 경과할 경우의 책임준비금 계산시는 이 보험의 약관대출이율+1.5%를 적용

t 가입후 경과년수 (단, 낸비반 일수에 대해서는 일수 세기)

제 5 장 계약 및 계산

7. 계약자 배당준비금의 계산에 관한 사항

- 가. 회사는 계약자에게 배당하기 위하여 개별사례당준비금을 적립하여야 하며, 계약자배당준비금은 매 사업년도말에 재정경제원장관의 승인을 얻은 금액으로 한다
- 나. 가항에 의하여 적립된 계약자배당준비금은 “계약자배당준비금 적립 및 배당에 관한 지침”에 따라 계약자에게 배당한다

8. 납입보험료, 보험종류 또는 보험기간을 변경할 때의 계산에 관한 사항

가. 납입보험료의 감액

납입보험료를 감액하고자 할 때에는 감액된 부분은 해약된 것으로 보고 다음 공식에 의하여 산출된 금액을 계약자에게 지급함.

$$[\text{지급액} = tWx \cdot n - tW'x \cdot n]$$

$$\begin{bmatrix} tWx \cdot n & \text{당초 보험계약에 대한 해약환급금 해당액} \\ tW'x \cdot n & \text{감액된 보험계약에 대한 해약환급금 해당액} \end{bmatrix}$$

나. 보험종류 및 보험기간의 변경

보험종류 또는 보험기간의 변경은 취급하지 아니함

9. 기타 보험수리에 관한 사항

없음